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Cipla-Medpro는 Glaxo와 Boehringer Ingelheim이 그들의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편, AIDS의 수직감염 mother-to-child transmission (MTCT)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던 TAC는 2001년 8월 20일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직감염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에 필요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²³⁾. Health GAP Coalition의 8월 22일 Press Release²⁴⁾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태어나는 HIV 양성 유아는 하루에 수백명에 달한다. 8월 22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A14면)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는 여성과 아이의 질병 치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면서, Nevirapine의 광범위한 보급을 거절했다. TAC는 MTCT를 막기 위한 치료약 공급을 위해 거의 4년 동안 투쟁해 왔다. 독일 회사인 Boehringer Ingelheim은 Nevirapine을 개도국에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남아공은 아직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5. 남한의 강제실시 사례

강제실시 사례는 아직 없다²⁵⁾. 따라서,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 해석의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글리벡(Bleevac)의 강제실시를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가. 국내 특허법의 규정과 절차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제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제정(이하 "제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정의 청구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http://www.bdfm.co.za/cgi-bin/pp-print.pl>

23) Notice of Motion, http://www.tac.org.za/notice_mition.txt

24) <http://www.cptech.org/ip/health/sa/hgap08222001.html>

25) WTO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TRIPs 이행의무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 홍콩, 멕시코 등 12개국과 함께 2000년 6월 23일~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TRIPs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법령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제실시권 또는 정부에 의한 실시에 대한 허용이 몇 건 있었는가? 본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또는 행정적 결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강제실시권 또는 정부실시에 대하여 허용된 사례는 없으며, 이에 따라 법률적·행정적 결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특허청을 상대로 '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을 청구한 사례는 1건이 있다고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구체적인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③ 특허청장은 제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08조(답변서 제출) 특허청장은 제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분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제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0조(제정의 방식) ① 제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113조(제정의 실효) 제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114조(제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제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제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제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제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15조(제정에 대한 불복이유 제한) 제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제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법원에 소송 ② 제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 한다.

나. 특허법107조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의 해석과 절차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강제실시는 불실시에 의한 강제실시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적당하게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불실시에 의한 강제실시보다 특허권자의 이익이 좀 더 많이 희생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허법의 목적에 좀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아직 국내에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도 없고 거의 사문화된 것이어서, 강제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주무관청인 특허청은 별도의 내부 운영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실시권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 양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규정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TRIPs 규정의 해석과 일본 특허청의 운영규정 및 일본 학자들의 해석을 참고하였다. TRIPs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강제실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WIPO에서 발간하는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38면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가 특히 적합한 예라고 설명하면서, 의료 장비를 예로 들면, 갑작스런 유행병이 발생한 경우 의료 장비를 빨리 수입할 필요가 있고, 의료 장비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를 수입하려 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지 않을 때 정부는 제3자 또는 정부 스스로 의료 장비를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유행병이 통제 가능한 상태로 된 다음에는 강제

실시 조치를 유지할 이유가 없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부여된 권리를 전부 회복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일본 특허법은 우리 나라의 현행법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실시가 비상업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법과는 차이가 있다(우리 나라의 구법에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일본특허청의 '재정제도의 운영요령'에는 ①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전, 공공시설의 건설 등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된 분야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② 당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그 결과 국민생활에 실질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란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의 보전, 공공시설의 건축 등 국민생활에 직접관계가 있는 소위 공공적 산업부문에 속하고 해당 발명이 긴급하고 널리 실시할 필요가 높은 경우(예컨대, 악성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이에 대한 특효약인 특허 발명품을 신속하고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동경대의 나카야마 교수는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단지 비용관계에서 필요한 경우, 또는 그 특허발명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재정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1998년 9월 1일 현재 이 규정에 의한 사례는 없으며, 일본 특허청의 '재정제도의 운용요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정청구가 있는 후 17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요시후지 '특허법개설', 나카야마 '특허법').

'비상업적 실시'의 해석: 정부가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비상업적인 실시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단체가 유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도 비상업적 실시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특허법상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業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데, 여기서 '業으로서 실시'란 개인적·가정적 실시를 제외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공사업·의료업·변호사업 등에서 행해지는 실시도 業으로서의 실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상업적 실시'란 '業으로서 실시'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실시'를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다. 글리벡 특허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청구'를 위한 논의

(1) 의의

에이즈(AIDS) 치료제를 둘러싼 사례들은 특허권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가격에 특허권에 의한 독점 가격이 허용되면 환자의 약에 대한 접근권이 크게 제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의 부여는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권과 환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얻는다 하더라도 실시주체나 실시방법(글리벡의 제조나 수입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환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글리벡'을 보급할 수 있는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글리벡'의 강제실시권 청구는 실효성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기 보다는 의약 분야에 미칠 수 있는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제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한 국내 제도·절차의 정비와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이 TRIPs와 같은 국제적 규범을 제대로 만드는 작업에 실증적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또 다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글리벡' 약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협상 능력이나 의지, 브라질·뉴질랜드의 사례²⁶⁾는,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통해 '환자의 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싸움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청구'의 의의를 실효성 측면에서 찾을 필요도 높다 하겠다.

26) 이에 대해서는 이 자료집의 「이성미, '의약품 정책: 글리벡 논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참조

(2) 특허와 권리자 확인

현재 '글리벡'에 대한 국내 특허권은 물론 외국 특허권의 존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노바티스의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이 2013년에 끝난다는 얘기만 확인될 뿐이다²⁷⁾.

그런데,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특허권과 권리자를 모두 특정해야 한다면 이것은 강제실시권의 발동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절차적 장벽이 될 수 있다²⁸⁾. 또한,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TRIPs 31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에서 "정부가, 특허 검색을 하지 않고, 특허를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 현재 실시하거나 장래에 실시할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것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²⁹⁾"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특허권을 특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실시하고자 하는 물건(약품)을 특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요건을 이렇게 규정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당시에는 검색이 되지 않는 특허가 있을 수 있고 출원만 되어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허권의 검색 시스템 자체가 미비할 수도 있음), 제약 특허의 경우 어떤 특허가 어느 약품에 적용되는지는 권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시를 청구하는 자가 빠짐없이 모든 특허를 적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 다른 문제는 특허권자가 여럿이거나 강제실시권 부여 후 특허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통상실시권은 등록이 대항요건임). 그러나, 권리를 특정하지 않고 물건만으로 강제실시의 대상을 정하는 데에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실시하고자 하는 약품의 약제정보와 이것과 관련된 최소한의 특허권을 청구인이 특정하면, 특허권자가 해당 약품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3) 107조 요건의 적용

- 공공의 이익: 글리벡은 만성골수성 백혈병 CML(Chronic Myeloid Leukemia)에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신문기사에 따르면, 국내 환자수는 1,000여명 정도이고 7월 현재 91명에게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함), 이것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시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글리벡이 일부 말기암 환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바람직하지도 의문이다.

- 비상업적 실시: 영리적 목적이 아닌 실시인 한 이 요건의 충족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4) 청구 주체와 실시 방법 및 기타

27) http://www.crt.org/news__nytimes5_01.htm 뉴욕타임즈 5월 1일자 기사 중 "Because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and GST are relatively rare cancers, the current market for Gleevec is quite small,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drug will be effective against other cancers. Novartis's patent on the drug expires in 2013, leaving the company 12 years to seek a return on its investment."

동일한 내용은 Emedweely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http://www.emedsecurities.com/sitetools/helpcenter/forms__pdf/emedupdate/06-11-01.PDF)

28) TWN의 briefing report (June 2001) E. proposals E.1.1 'Compulsory Licensing'에서 "Another problem facing developing countries are the difficulties they face or may face in having to follow several procedural requirements or conditions prior to or in the process of granting compulsory licenses. Article 31 specifies several such conditions, including procedures for obtaining authorisation of the right holder on reasonable commercial terms and payment of "adequate remuneration," etc. These procedural conditions should not become a hindrance to the issuing of compulsory licenses."라고 주장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29) Article 31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b) In the case of public non-commercial use, where the government or contractor, without making a patent search, knows or has demonstrable grounds to know that a valid patent is or will be used by or for the government, the right holder shall be informed promptly

- 시민단체 명의로 할 것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민간단체가 실시권을 얻었을 경우 스스로 실시(예컨대, 생산이나 수입)할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만약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면 실시권자가 다른 자에게 재실시를 허락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고려해야 한다. 특허법 102조3항에 따르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재실시허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곳은 법개정의 필요성도 느껴지는 대목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시에 적합하다면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 노바티스는 실시권자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글리벡을 reverse engineering하여 카피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특허권자가 강제실시권자에게 특허품의 실시에도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실시권은 성질상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이 될 수 밖에 없고, 통상실시권자에 대해 특허권자는 침해금지를 제기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설명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면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특허법 42조 3항: 詳細한 說明에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發明의 目的·구성 및 效果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시권자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강제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 식품의약품으로부터 약품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강제실시권 운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바티스 사이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단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 스위스 정부나 노바티스사의 WTO 제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6. 결론

특허제도는 개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줌으로써,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기술의 확산과 보급을 촉진하여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려는 산업정책의 영역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과학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특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당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의 수단으로 합의된 재산권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점권'이 애초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면, '수단에 대한 합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TRIPs 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을 통해 특허권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확대·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수단에 대한 합의'를 고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강제적인 국제질서는 개별국가에서 자주적인 산업정책이나 보건·건강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여기서, 특허권의 강화란 공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영역(예컨대, 강제실시)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의 확대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³⁰⁾을 말한다. 그런데, '특허권의 강화'는 미국만을 위한 강화로 매우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태국과 남아공 사례는 제약자본과 미국에게 의약품이 더 이상 개도국·최빈국의 환자에게 공급해야 할 '약'이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한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다. '약'을 '상품'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의 중심에는 '특허'가 자리잡고 있다. '상품'을 '약'으로 복원시키려는 개도국·최빈국의 최소한의 노력에 대한 제약자본과 미국의 압력은 '약'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특허제

도의 공익적 성격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TRIPs 협정의 규정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현실적 보장을 달라는 개도국들의 소박한 노력조차 큰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프리카 그룹을 중심으로 한 70여 개도국들은 금년 11월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각료 회의의 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에서 'TRIPs 협정의 어떠한 것도 제약국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³¹⁾'는 원칙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공중의 건강을 위한 조치에는 자국내 생산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병행수입, 제네릭 약품의 좀 더 간편한 시장판매 허용 절차, 다른 WTO 제약국의 공중 건강의 필요에 따라 의약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주장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행사는 사회·경제 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TRIPs 제7조의 규정과 '제약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동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과 영양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권리간 기술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TRIPs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최대한 TRIPs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중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도국의 주장에 대하여 미국과 스위스를 축으로 하는 선진국³²⁾들은 'HIV/AIDS 및 세계적 유행병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으로 한정하여 각료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공중의 건강과 TRIPs 협정'에 대한 각료 선언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며, TRIPs 협정이 의약품의 접근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정의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전제에서만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취할 각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하고, 병행수입으로 인한 의약품 국제 유통의 왜곡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자의 대립되는 주장 중간 어디쯤 서 있는 유럽³³⁾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도하 각료 선언문 채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각료 선언문은 그것이 비록 TRIPs 협정의 내용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 내용 해석의 독점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TRIPs 논의의 현장을 통해, 생명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별국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이 통제할 수 없다는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공의 '개정법 소송 취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 사회 영역의 지속적인 싸움과 투쟁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글리벡 약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공공성과 특허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약자본의 요구에 끌려가는 정부를 두고 있는 남한의 현실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2001 민중의 복지노동 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 의약품공공성 한마당 자료집]

31) Nothing in the TRIPs Agreement shall prevent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to protect public health

32) 캐나다와 일본, 체코, 뉴질랜드가 이 대열에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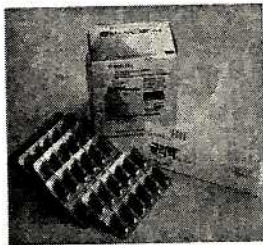
33) 유럽은 총론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을 따르는 것 같지만, 각론에서는 미국-스위스 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한다.

30) '의약'이 특허로 편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TRIPs 부속협정이 체결되기 전 약 50 여개국이 의약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1960년, 독일은 1968년, 일본은 1976년,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는 1978년에 각각 의약 특허를 제도화했다.

성명서

백혈병 환자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연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노바티스가 지난 11월 27일, 글리백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적의 약이라 불렀던 글리백,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마지막 약까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글리백은 죽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보험약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빛을 내서라도 약을 먹고 있던 환자들에게 약물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이 없어진 환자들은 병원 무균실에서 내쫓기고 있습니다.

전세계 단일 가격이 환자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노바티스가 공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되어오던 보험약가결정이 맘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바티스가 원하는 것은 한 알 당 2만5천원이라는 전세계 단일 가격입니다. 세계에서 약값이 가장 비싼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 가격으로 결정된 후, 우리가 약값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도 이 가격에 결정됐습니다. 노바티스는 한국에서, 보험약가를 2만5천원으로 고시해주면 외래환자부담금인 30%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문가를 동원해 환자들을 한 명 씩 설득해왔습니다.

다른 질병과 다른 약물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백혈병 환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해왔습니다. 이제 이 환자들의 생명줄을 노바티스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허에 의한 살인입니다!

전세계 단일가격을 얻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이것은 전세계에 글리백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노바티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4-8알 씩 먹어야 하는 글리백, 하루에만 약값이 10-20만원이고 한달이면 300-600만원입니다. 무능한 정부는 노바티스와의 협상을 통해서 약값을 내리기보다는 백혈병 환자 중 일부를 보험급여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글리백의 개발자금이 대부분 공적으로 조달되었다는 것, 원가가 수십분의 1 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것, 임상 3상을 채 마치기도 전에 시판될 수 있었던 것은 백혈병환자들의 노력에 의해

서라는 것,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임상실험도 미 국립보건원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약을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죽어가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천문학적인 이윤에 조금 더 보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노바티스는 글리백 공급을 재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글리백 공급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 정부는 조속히 협상태이블로 복귀하여 보험약가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 정부는 만성기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 제외 결정을 철회하고, 약값을 낮춤으로써 재정보전을 꾀해야 합니다.
- 정부는 글리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 노력들에는 지난 WTO 각료회의에서 확인된 바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 노바티스는 글리백 개발과정에서 노바티스의 기여도와 글리백의 생산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약값은 전세계 동일 가격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발비용과 원가, 이윤에 대한 공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2001년 12월 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민중복지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서울여성노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해외 단체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말라위), ACT UP New York (미국), ACT UP/East Bay (미국), Critical Path AIDS Project (미국), Health GAP Coalition (미국), ACT UP Philadelphia (미국), ACT UP-Paris (프랑스), ACT UP Brussels (벨기에), Swiss Coalition of Development Organizations (스위스), Oxfam GB (영국), Renaissance Sant'e Bouak'e (아이보리 코스트)

개인연명

Catherine Munthali (Executive Director,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PO BOX 1207, Lilongwe, Malawi)

- 나 Catherine Munthali와 나의 단체인 The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은 남한의 백혈병 환자와 사회단체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리 단체는 노바티스가 글리백 공급을 재개하고 남한의 환자들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한 정부는 보험급여범위에서 어떤 백혈병환자도 제외해서는 안되며, 글리백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누구라도 이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enneth Stailey (Takoma Park, MD USA)

- 나 Kenneth Stailey는 남한의 백혈병 환자와 사회단체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나는 노바티스가 글리벡 공급을 재개하고 남한의 환자들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한 정부는 보험급여범위에서 어떤 백혈병환자도 제외해서는 안되며,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은 누구라도 이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avid M. Halperin (교수, University of Michigan, 미국)

- 나는 남한의 백혈병 환자와 사회단체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나는 노바티스가 글리벡 공급을 재개하고 남한의 환자들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한 정부는 보험급여범위에서 어떤 백혈병환자도 제외해서는 안되며,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은 누구라도 이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희정 (이화여자대학교 회화과 4학년)

- 돈과 관련된 일은 언제나 우리를 가슴시리게 하지만 돈과 생명이 관련된 이런 일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글리벡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개발되고 공급되어진다는 건 인류에게 참으로 불행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글리벡 공급을 재개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Bjorg Sandkjar (Oslo, Norway)

- 나, Bjorg Sandkjar는 남한의 백혈병 환자와 사회단체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나는 노바티스가 글리벡 공급을 재개하고 남한의 환자들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한 정부는 보험급여범위에서 어떤 백혈병환자도 제외해서는 안되며,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은 누구라도 이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ilton allimadi (The Black Star News 발행인)

- The Black Star News(미국)의 발행인으로서, 이 성명서에 연명합니다.

홍성태(상지대 교양과)

-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어진 양이 사람을 잡아 먹었다면, 이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특허권이 사람을 잡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을 그저 참아 넘긴다면, 특허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잡아 먹고 말 겁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자들을 빼고.'

그 외 박정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Joseph Essombo (의사, 아이보리 코스트), Julie Davids (Critical Path AIDS Project, 미국), Doug Larsen

기고글

특허권과 인권

-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

남희섭(변리사, 공유지적재산권모임 IPLeft)

특허권을 인권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특허권에 의해 침해되는 인권의 경우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조금 의의일 수도 있겠으나,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관념도 국제적 인권 개념에 수용되어 있고 우리 헌법에도 일반 재산권과 별도로 22조 2항¹⁾에서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²⁾ 다만,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나 물건에 대한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적재산권은 창작을 전제로 정당화되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권이다. 이처럼 창작을 전제로 한 지적재산권의 인권 개념은 1948년과 1966년 UN 총회에서 각각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27조 2항³⁾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5조 1항⁴⁾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인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지적재산권을 생각한다면, 특허권과 인권의 문제는 서로 다른 인권 상호간의 갈등과 조정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와 조정 문제와 지식·기술의 확산과의 보완관계로부터 생기는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한계와 제한의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이 전개되는 현재의 양상을 권리자의 재산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제적인 국제질서를 통해 지구적 규모로 확대·강화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 속에서 파악한다면, 이로 인해 점점 더 심화되는 인권과의 충돌 문제로부터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 1994년에 체결된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지구적 차원에서 확대·강화하는 기초가 되었는데, 지구적 시대에 접어든 지적재산권의 최근 국면은 다음의 3가지 현상으로 설명된다. (1) 보호대상의 확대(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조작된 유전자·컴퓨터 프로그램·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과 의약에 대한 물질 특허), (2) 새로운 권리의 창설(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심지어 저작물성이나 편집물성을 요구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입법⁵⁾), (3) 지적재산권의 행사의 공격성 심화.

-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2)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박성호, "지적재산권과 인권",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 제2장 참조.
- 3)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4) 이 규약의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 5)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12월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 법안'이 그것인데 이는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제작자가 5년간 독점하도록 하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법률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음을 용변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적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와 '모순'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와 모순은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재에 대해 확대 강화된 지적재산권은 대다수의 정보 사용자가 추구하는 정보 자유권⁶⁾과 충돌한다⁷⁾. 한편, 생명공학 기술은 인간의 신체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간존엄의 명제를 좁은 의미의 일신전속적 자유와 안녕을 넘어서서 사회적·지구적 환경과 다음 세대의 생존의 맥락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단계의 인권으로서 '생명 인권'이나 '세대간 인권'이 주장⁸⁾되기도 한다.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생명권

인간의 신체에 관한 권리 중 건강권·생명권은 의약품에 부여된 특허권과 직접 관련이 되는데, 의약품 특허는 ① 독점가격으로 인한 의약품의 접근성 문제와 ② 선진국만을 위한 불평등한 특허권 강화⁹⁾의 문제 2가지가 핵심이다.

의약품의 접근성 문제는 AIDS 치료약을 둘러싸고 '특허에 의한 살인'이 얘기될 정도로 특허권의 악랄한 모습을 부각시켰다. AIDS 치료약은 초국적 제약기업이 개발, 생산, 유통 단계를 과잉 결정하는 압도적 행위자로 자리하고 있고, 치료약 대부분에 특허가 걸려있다. AIDS와 관련된 약가는 92-98년도 사이에 평균 434%나 상승했는데, 이것은 제1 세계와 제3 세계 환자들 사이에 심각한 접근성 불균형을 가져왔다.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 환자 중 85%가 AZT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보건자 중 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또한 AIDS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방 나라들 평균 1인당 GNP의 10배에 달한다. 케냐의 경우 HIV에 감염된 사람이 2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HIV 감염으로 인해 하루에 7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지만, 케냐에서 AIDS 치료제와 다른 필수 의약품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들은 겨우 0.043-0.086%에 불과하다¹⁰⁾. AIDS 치료약의 접근성을 높여려는 제3 세계의 노력은 초국적 제약기업의 특허약을 강제실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특허권을 무력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제약회사가 이것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속적인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허권이 한시적인 독점¹¹⁾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개발자에 대한 보상에 있으므로, 특허약물의 가격이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 질문은 특허제도를 뒷받침하는 혁신이론(Innovation Theory) 즉, 발명자를 모방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발명자에게 혁신 비용을 감당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과 맥이 닿아 있다. 실제로 제

6) 이러한 자유권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정보를 남과 나눌 자유 및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7) HeeSeob Nam et al., "Digital Environ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2001

8) 박은정, "생명공학 기술과 인권",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

9) '특허권의 강화'란 특허권의 보호대상 확대, 존속기간의 연장, 침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허권이 제한되는 범위의 축소 예컨대, 특허제품의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허용이 약화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10) 정혜주, "필수의약품: 제약회사로부터 환자에게로", 의약품 공공성 한마당 토론자료집 2001. 10. 27.

11)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데, 이 기간을 '한시적'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도 의문은 든다.

약자본과 이들을 옹호하는 선진국 정부는 의약품 특허와 독점 가격을 제약기업의 높은 연구 개발비 때문이라고 합리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최소한 2가지 지점에서 공격받는데, 첫째 대부분의 신약 개발은 제약기업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독점 가격은 제약기업의 혁신 비용 또는 투하 자본의 회수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품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기술의 확산에 기여하고 공중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약국에만 진열되어 있을 뿐 환자의 몸 속에 투여되지 못하는 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먼저 특허약의 개발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자.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특허약물 중 많은 것들이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초기 개발을 시작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의 자료("NIH Contributions to Pharmaceutical Development", Feb. 2000)에 따르면, 가장 많이 팔리는 5가지 약물(잔탁, 조비락스, 카포텐, 바소텍, 프로작)의 개발에서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가 77-95%에 이른다. 신약 개발 과정은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스크린해야 하는 전임상 실험과 임상실험, 시판후 실험 단계를 거치는데, 3상 임상실험에 드는 비용은 전임상 실험 비용의 17%에 불과하다¹²⁾. 그런데, 대부분의 제약기업들은 공적자금의 투자로 성공가능성이 이미 밝혀진 약물을 선택한다. 이미 전임상이나 임상실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약물들을 선택하여 제약회사는 그 이상의 실험을 하거나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수준까지 이미 개발이 진행된 약물에 대한 특허권을 제약회사가 취득함으로써, 대부분의 이익을 제약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의약특허는 정당한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에서 전제로 하는 낭만적 저자 개념과 유사한 특허제도의 '천재적 개인에 의한 발명' 사상¹³⁾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으로 특허제도에 의한 독점가격과 투자자본의 회수 문제를 살펴보자. 제약산업은 18.6%의 순이익율로 지난 5년동안 가장 이윤이 높은 산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계 10대 제약회사의 2000년 총매출은 약 2,0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이고, 1위인 GlaxoSmithKline은 304조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특허약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0% 정도이다. 그런데,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판매액 대비 10-20%에 지나지 않는 반면, 마케팅과 관리비용은 30-40%에 달한다. 특허가 연구 개발비의 보상 수준이 아니라, 거대 이윤을 창출하는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특허약의 독점가격은 투자자본의 보상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 국가의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제약기업들이 개도국에서 높은 약값이 보장되어야 연구개발의 동기가 마련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매출액 기준으로 전세계 제약시장에서 미국은 34%, 유럽은 29%, 일본은 16%를 차지하는데 아프리카는 1.3%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인구의 67%가 거주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합해도 전체 제약시장의 8%를 차지하는 데에 그친다¹⁴⁾.

제약기업에게 시장독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는 특허 약물과 일반약(generic drug)의 가격차이¹⁵⁾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제약 분야의 특허분쟁은 전자나 기계 산업의 특허분쟁과 달리 라이선스 협정과 같은 화해의 방식으로 종결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승소나 패소로 시장진입 성공 또는 시장 축출로 결론이 난다는 사실¹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2) Paris MSF/WHO Workshop on "Drugs for Communicable Diseases, Stimulating Development and Securing Availability" 1999. 10. 14-15. 앞의 글 '정혜주' 각주 32에서 재인용

13) 미국 구 특허청 현관에 새겨진 링컨의 말 - 특허제도는 천재의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은 이러한 사상을 극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14) Cecilia Oh, "Patent and Monopoly Prices", 2001 <http://www.twinside.org.sg/title/twr131b.htm>

15) 특허권이 만료된 의약의 국가별 가격차이는 최대 8배이지만, 특허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무려 59배까지 된다.

16) 이대희 "특허분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게임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 1996년 고려대박사학위논문



의약품 특허의 또 다른 문제는 특허권의 강화가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현실'의 문제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탄저균 소송이 있을 때 미국 보건부 장관은 탄저병 치료제 '시프로(Ciproflaxin)'의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바이엘(Bayer) 사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한발 앞서 탄저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캐나다 정부는 '시프로' 특허를 무시하고 자국 제약회사인 '아포텍스'에게 100만 정의 복제약 생산을 지시했다. AIDS 치료약을 강제실시하려고 했던 남아공, 태국, 브라질과 같은 제3세계에게 정치적 압력과 무역보복을 가했던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특허권의 강화가 '미국'만을 위한 불평등한 현실의 중심에 있다. TRIPs 일반이사회에서 의약품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7월 10일 발표된 UN 개발계획의 '인간 개발 보고서 2001¹⁷⁾'는 TRIPs 협정의 공정한 이행이 보장되어야 하며,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허의 강제실시와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병행수입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실제로 강제실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는 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의약품, 컴퓨터, 래커차(tow truck), 소프트웨어,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에 대해 수백 건의 강제실시를 발동해 왔으나, 지금까지 지구 남반구에서는 특허의 강제실시가 부여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올해 초 브라질 정부에서 AIDS 약물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큰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다. 남반구에서 강제실시 사례가 전무한 이유는 개도국의 강제실시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다국적 제약자본의 통상압력과 소송 때문이다. 태국에서 2000년 초 BMS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AIDS 치료약 DDI를 강제실시하려고 하자 미국은 이 강제실시 계획을 취소하고 특허법과 무역관련법을 개정하여 강제실시를 불법화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한, 태국의 최대 해외 무역품인 보석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줄이겠다는 위협과 함께 목재와 보석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깎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AIDS가 창궐하던 1997년 11월 남아공 의회는 '의약품과 관련 물질관리를 위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은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보건부 장관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정부와 제약회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1998년 3월 남아공을 방문한 클린턴은 '개정법'에 대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불평을 전달하면서 '개정법'을 고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1998년 미국무역대표부는 남아공에 대해 최혜국 대우에 의한 추가 이익을 얻기했고, 1999년 4월에는 남아공을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 39개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개정법'이 남아공 헌법에 위배되고 TRIPs 협정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17) <http://www.undp.org/hdr2001/completenew.pdf>

1998년 2월 남아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¹⁸⁾. 이 소송은 국제적 비난여론에 밀려 올해 4월 19일 취하되었지만, AIDS 환자에게 죽음으로 다가오는 특허 문제가 제약 자본에게는 단지 좀 더 많은 이익의 문제일 뿐임을 시사해 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카타르 도하 WTO 각료회의의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각료선언'에서 "회원국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TRIPs 협정이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는 점과,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의 압력과 무역보복이 앞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생명권의 문제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는 AIDS 치료약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의 '클리백'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특허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클리백 사건의 전개

클리백(STI571, 일반명: Imatinib)은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로 급성기, 가속기, 인터페론불응 만성백혈병환자에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약제이다. 클리백은 3상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정식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동정적 사용법이 적용되어 5월 20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치료가 시급한 일부 환자에게 투여가 시작되었다¹⁹⁾. 클리백 제조사인 노바티스가 제출한 품목허가신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개월이라는 유례없이 신속한 검토기간을 거쳐 6월 20일 모든 단계의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해 클리백을 허가했다. 스위스와 미국을 이어 세계 3번째였다. 이후 클리백 약가·보험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환자단체, 노바티스, 보건복지부 사이의 지리한 싸움에 시작되는데, 신약에 관한 보험약가산정기준에 기초해 노바티스는 캡슐당 25,005원이라는 가격을 고집했고, 보건복지부는 줄곧 17,000원대를 고수해 왔으며, 환자와 시민단체들은 클리백 시판가격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일본에서 약가결정이 날 때까지 국내 약가결정을 유보해 달라는 노바티스의 요청을 무시하고 11월 19일 클리백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노바티스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30%가 낮은 100mg 캡슐당 17,862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노바티스측은 고시된 클리백에 대한 보험약가에 불응하고 당초 제안한 25,005원의 가격상한선을 보험약가산정 관련 법령에 따라 재신청하는 한편, 클리백의 약가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에델만코리아²⁰⁾는 "클리백의 약가는 국제적 합의를 이룬 가격"이라며 "이번 약가결정으로 인해 미국 대외통상무역부(USTR)로부터 강도 높은 통상 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클리백 보험약가에 대한 더 이상의 정책적 검토는 없다는 정부의 약가 고시 후 1주일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서울시내 일부 병원(여의도 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병원)에서 환자들이 약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환자들의 말을 빌리면, '노바티스에서 클리백을 수거해갔고 클리백을 처방하면 의사면허를 취소당한다'며 의사들이 클리백 처방을 거절했다고 한다²¹⁾. 이에 대해, 국내의 진보적 보건의료 단체와 Oxfam을 비롯한 11개 해외단체들이 클리백 공급 중단을 규탄하고, 대한의사협회도 노바티스를 비난하자, 노바티스는 12월 5일 약가결정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환자들에게 클리백을 무상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8)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남희섭,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 남한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의약품 공공성 한마당 토론회자료집 2001. 10. 27.」 참조

19) 이성미, "의약품 정책: 클리백 투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의약품 공공성 한마당 토론회자료집 2001. 10. 27.

20) 노바티스는 클리백 관련 문제를 다루던 홍보대행사가 있었는데, 클리백 문제가 국제통상문제로 변하자 통상 홍보 분야의 전문 컨설팅 회사인 에델만을 11월부터 새로 고용하였다.

21) 병의원에서 클리백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으려면 한국노바티스에서 제공하는 25,005원에 클리백을 사서 17,862원으로 처방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25,005원에 처방하거나 비보험항목으로 처방하면 건강보험법에 위배된다.

글리백 사건의 합의 및 결론

글리백 사건은 약제비 통제와 약가산정방식과 같은 의약품 정책과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점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응한 환자들 최초의 약가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과 환자와 보건의료 단체가 연합한 최초의 연대 투쟁을 만들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에서 지적했던 의약품 특허의 모순(특허에 의한 독점 가격과 약의 접근성 제한)에서 글리백 사건이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글리백 논쟁에서 특허는 표면화되지 않은 숨은 이슈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노바티스가 혁신적 신약을 개발했다는 인식이 특허권을 통한 보상의 정당성에 심정적 기여를 하면서 특허 문제가 묻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글리백의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 글리백의 개발사인 노바티스는 1993년 국립암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오레곤 암센터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암발현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화학물질 STI571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후 8년이 지난 2001년 5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글리백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1960년 한 과학자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특이한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면서 30년간 염색체 이상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숭한 연구작업과 노력으로 암의 발현을 차단하는 신물질 STI571의 개발이 가능했다. 또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바티스가 개발을 포기하려 하자 2천명이 넘는 환자들이 FDA에 탄원을 함으로써 글리백은 희귀약품으로 지정받는 혜택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개발비용 전액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았다. 글리백이 노바티스의 단독 연구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특허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특허를 무기로 생산단가의 38배에 가까운 가격을 노바티스가 고집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가격'이 고려되지 않은 '이윤 추구'로만 특허가 작용하고 있음이다. 12월 9일 현재 글리백이 처방전으로 사용이 승인된 나라는 모두 27개국인데, 신약의 약가산정방식에 따른 외국 7개국(독일, 미국, 영국, 이태리, 일본, 스위스, 프랑스)과 비교할 때 노바티스의 한국 신청 가격이 가장 낮다. 그러나, 1인당 GDP와 환자 본인 부담율을 고려하면, '먹을 수 있는 가격'은 일본의 3배, 미국의 7배, 영국의 20배로 가장 높다.

한편, 노바티스가 미국과 스위스에서 결정된 가격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가격 결정이 무산되면 시장 철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계속 글리백에 대해 전세계 단일가격 정책을 고수하는 것²²⁾은 시장 독점때문에 가능한데, 이 시장독점을 유지해주는 제도적 틀이 바로 특허권이다²³⁾. 글리백과 관련된 특허는 모두 5개가 있다. 글리백의 기본특허는 1992년 4월 3일 스위스에 출원한 CH 921083이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43개의 패밀리 특허가 존재하고 국내에는 특허 제261366호(피리미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등록이 되었다. 나머지 4개의 특허 중 하나는 PCT 국제특허로 국내에는 2001-21950호로 공개되어 있고, 우리 나라가 지정국으로 포함된 2개의 국제출원(WO 2000042042 A2, WO 2000009098 A2)과 하나의 미국특허(USP 6,214,819)가 있다.

노바티스를 포함한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의약품은 환자에게 공급할 '약'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에 더 가깝다.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다. '약'을 '상품'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의 중심에 특허가 자리잡고 있다. 상품을 약으로 복원시키고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에는 보건의료 정책도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지만, WTO 각료선언에서도 밝힌 '공중의 건강이 특허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약'의 공공성 뿐만 아니라 특허제도의 공익적 지향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의 강제실시 경험이 없는 전무한 우리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특허권이 제한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합의와 실천이 글리백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번론 11/12월호)

22) 노바티스는 약가를 25,005원으로 고시하면, 환자 부담금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않겠다며 환자 단체들을 회유하고 있는데, 노바티스에게 단일가격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3) 제약산업의 이윤은 시장 독점에 의존하는데, 시장 독점은 대부분 특허권에 기초한다(Drug Discovery Today 1998)

제 5장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 문제점과 대안

제 5장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 문제점과 대안

활동개요 / 252

성명서 :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25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 문제 · 오병일 / 255

2001년 특별단속을 정치적으로 읽기 · 원낙연 / 260

한국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천국인가? · 김인수 / 265

소프트웨어 생산/소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 오병일 / 272

활동개요

2001년 3월 검찰과 경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특별단속이 강력히 전개되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 이번 단속이 최근의 경기침체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던 벤처기업을 주 타겟으로 전개되었고, 사상 유례없이 폭력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단속에 대한 상당한 저항을 불러왔다.

어쨌든 이번 단속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복제가 범죄라는 대전제 하에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성과 불법성, 미국의 통상압력 문제, 단속주체와 단속대상의 모호함 등만 지적하는 한계를 가졌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의 문제점은 정책적, 절차적 문제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산/소비 전반에 걸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단속 이전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인지, 왜 시민들이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관점 등 폭넓은 관점에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 환경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문제를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는 삶의 일부가 되어있으며, 소프트웨어에 무리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를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 다른 여러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과 인권, 프라이버시, 정보접근권 등 다른 가치들이 조화를 이루는 소프트웨어 생산/소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PLeft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과 소프트웨어 생산/소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하여,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정책적, 시민운동 관점에서 폭넓고 진지한 문제의식을 담아 단행본을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의 역량부족과 사회적 환경의 미성숙 등의 문제에 부딪혀 출판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 본 자료집에서는 이 때 집필되었으나 발표되지 못한 글들을 소개하고 있다.

성명서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의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 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컴퓨터의 보편화에 따라, 운영체제, 워드, 통신 프로그램 등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 프로그램들이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독점기업들은 고가의 가격책정으로 정상적인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더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즉, 데이터 교환 등으로 인해 한사람의 이용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로 인해서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은 이용자에게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생산구조 자체가 왜곡되어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한 사회의 소프트웨어 기반이 특정 독점기업의 손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한다.

특히, 이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이루어졌다는데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개별적인 무역협상이나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을 통하여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계를 강요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 하지만, 각 국의 지식, 문화기반에 관한 정책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독점기업의 이윤을 위해 자국민들을 때려잡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셋째,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폭력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실사 불법복제 단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고소에 의해,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복제 단속은 그 대상도 광범위하고 임의적이며, 심지어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사무공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 단속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담당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며, 폭력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나,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폭력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공유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노동자의힘(준) / 노동정보화사업단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민주노동당 / 부산정보연대 PIN / 시민사회네트 /
정보통신연대 INP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한국노동네트워크 / 홍성태 (상지대 교수)

기고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의 문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번에는 유달리 폭력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불만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사실 이러한 단속 바람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작년에 회사와 대학을 몇 차례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초비상에 걸렸었다. 단속반이 오면, 차라리 컴퓨터를 부숴 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대책안인 대책까지 생겨났다. 단속 과정에 대한 불만과 정품 구입 비용의 부담으로 단속을 당한 당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정작 이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언론을 통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간혹 '현실'의 문제-즉,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정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를 들먹거리기는 하지만, 결국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정품 사용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들의 결론대로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 도둑놈들이고(우리나라에서 불법복제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단속을 당한 사람들의 분통도 방귀편 늪이 성내는 것밖에 안 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를 죄인으로 몰아넣는 법이라면 분명 큰 문제가 있다.

1.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느낀다면,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번 불법복제 단속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워드, 통신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제반 수단은 수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재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중요 프로그램들이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해외 독점기업들은 고가의 가격책정으로 정상적인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1) 운영체제, 워드, 그래픽 등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만 해도 2~300만원이 드는데다가, 이를 각 컴퓨터마다 구입해야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한 프로그램의 사용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1) 소프트웨어 가격표(SPC 소속회사 제품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세탁기의 경우 내가 삼성 세탁기를 쓸 것인가, LG 세탁기를 쓸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효과(즉, 데이터 교환 등으로 인해 한사람의 이용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된다)에 의해서 선택의 여지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나는 MS 워드를 쓰기 싫어도 다른 사람이 보내준 MS 워드 문서를 읽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을 쓰던 사람은 쉽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못하고, 계속 쓰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특성에 의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강화되어 나간다. M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초기에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불법복제를 용인하는 것도 시장 점유율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처음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MS윈도 같은)들을 배우게 되고, 계속 쓸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컴퓨터 전문가들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소프트웨어 생산구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책임방기 책임을 몰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불법복제 단속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인권침해 문제이다.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혹은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²⁾ 그리고,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고소가 없이 무작위로 단속하거나, 영장 없이 단속을 실시하거나, 혹은 고소가 된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단속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속 과정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 및 거주권을 침해하게 됨으로, 엄격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은 그 대상도 광범위하고 임의적이며, 심지어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불법복제 단속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 프라이버시권이 있듯이, 사무공간 역시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무공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폭력적인 단속과정을 볼 때, 이에 가정이라고 안전하리라는 법이 있을까?³⁾

회사명	홈페이지	제품명	가격(원, 소비자가격)
MS	http://www.microsoft.com/korea/	Window2000Pro	427,000
		Windows 98 SE	291,000
		Windows Me	276,000
		Office2000 Pro	693,000
		Excel 2000	558,000
Adobe	http://www.adobeupgrade.co.kr/	Photoshop 5.0	1,265,000
Macromedia	http://www.macromedia.com	Flash 5.0	520,000
한글과컴퓨터	http://www.haansoft.com/	한글워드안	88,000
새롬	http://www.serome.co.kr/	새롬 데이터맨 98	19,800
윤디자인	http://www.yoondesign.co.kr/	윤소호 6 3System	231,000
나모	http://www.namo.co.kr/	나모4.0	70,000
안철수연구소	http://www.ahnlab.com/	V3 Pro 2000 Delux	55,000

정보통신연대 INP 성명서 참고자료에서 인용.

2) 프로그램보호법 제48조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하지만, 프로그램 가격이나 단속 과정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 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이다.⁴⁾ 그런데,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체계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작권법은 문화, 예술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이다. 문화의 진흥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⁵⁾,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창작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복사, 배포 등)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문화, 예술의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창작자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보호 기간을 제한한 것도 그렇고⁶⁾, 교육, 연구, 보도, 비평, 사적 이용 등의 경우 저작권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⁷⁾ 창작자에게 일정한 기간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도, 문화의 진흥이라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과연 문학, 음악, 미술작품과 같은 문화, 예술의 창작물인가, 그리고 50년이라는 보호기간이 적당한가하는 것이다.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저작물'이며, 따라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단계의 프로그램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용 환경에 적합하게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차이가 있다. 이에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수정, 혹은 개발을 제약함으로써, 결국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접근하는 동시에 소스를 얻게 됨으로써,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이용과 소스의 공개가 분리되어있어, 프로그램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별 이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는 강력한 반면,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둘째, 저작권이 보호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보호기간 이후에는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체계로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저작권법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방식이 변화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작권법은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보호법과 함께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3) 개개인들을 어떻게 다 단속하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개인들을 다 단속할 필요는 없다. 본보기로 몇 명만 단속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뀔테니까.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법복제 여부를 체크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출시되었다고 한다.

4) 다른 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5)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현재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일 지적 생산물을 다른 유체물과 같이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보호기간을 한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7) 저작권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 한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제조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통상 압력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졌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정보, 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정보, 문화 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주의! 정보, 문화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 문화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복제, 배포될 수 있다면, 정보와 문화가 '상품'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별적인 통상압력이나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 국제협약을 통해서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계를 강요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이 형성되어온 과정은 이러한 압력에 굴복한 역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단속이후 각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증가율에 있어서는 한컴이나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 회사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시장규모가 큰 MS나 아도비(adobe)같은 해외 독점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외국 기업의 배만 불러준 꼴이다.



각 국의 지식, 문화기반에 관련된 정책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지식, 문화 자체가 단지 '상품성'이라는 단일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마다의 고유한 가치에 근거하여 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선진국의 요구에 대응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외세의 입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실재 없이 바뀌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그리고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성 없는 저작물까지 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속에 함축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화란 말인가?

3.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대안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 즉 누구나 별다른 차별없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협의하거나, 혹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그누/리눅스(GNU/Linux)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⁸⁾ 정부는 그누/리눅

8) 작년, 2000년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암호화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에 복제방지 장치를 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깨는 것-즉, 암호를 푸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연구, 개발이나 사적인 이용 등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9)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리라이트(COPYRIGHT), 즉 저작권을 패러디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반공공라이선스(CPL : General Public License)를 덧붙여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수정, 배포할 수 있되, 재배포하는 프로그램 역시 CPL 하에 배포되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일종의 라이선스이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http://www.fsf.org>)을 설립한 리처드 스톨만이 처음 고안한 것으로, 우리에게도 리눅스로 널리 알려져있는 그누/리눅스(GNU/Linux) 운영체제가 카피레프트로 배포되고 있다.

스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든가, 정부 부처부터 먼저 그누/리눅스를 채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격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한 사회의 소프트웨어 기반이 MS와 같은 특정 독점기업의 손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현재와 같이 국민 대다수가 MS의 윈도를 쓰고 있는 상황은 국가적으로 무척 위험하다. 만일 MS가 아무도 모르게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다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혹은 MS의 기술, 정책 변경에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 세계의 운영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MS는 사실상 또 다른 국가인 셈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나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Left(<http://www.ipleft.or.kr>)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대중적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의 현실은 사회운동단체조차 불법복제 단속의 그물에 걸릴까 노심초사할 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듯하다.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등 위축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왜곡된 생산구조와 법체제를 개혁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네트워크 9호(2001년 3,45월))

2001년 특별단속을 정치적으로 읽기

원낙연(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Ileft 회원)

1. 정치적 관계의 중요성

정부는 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단속에 열을 올릴까? 궁극적으로 풀기 위해선 먼저 SW를 둘러싼 수많은 정치적 주체들의 움직임을 읽어야 한다. 때론 은밀하게 때론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각 주체들의 행동을 전체적인 관계망 속에서 해석해낼 때 궁극적으로 조금씩 풀림을 알 수 있었다. 참, 주체들이 뛰어노는 무대는 한국만이 아니다. 어차피 경제는 무한하겠지만 그래도 한정하자면 전지구적 환경이다. 각종 국제협약과 국제적 주체들이 이 정치판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연급만 고려하자면 미국과 한국의 선수들로 모아지겠다.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대표 선수가 되겠지만 장면에 따라서는 기업들도 대표 선수로 얼굴을 내밀고, 심지어는 감독의 역할까지 도맡는다.

밑적이 떨어져서 본다면 무척 재미있을 이 정치판도 시민이 흥정의 대상이 된 상황에선 심각하게 파고들어야 하지 않겠나.

2. 정치적 주체들

그럼 먼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주체들에 대해 알아보자. 너무 단편적인 설명이라 혹시라도 이들의 관계가 필자의 문장 속에서 국한된다고 오해하진 마시길. 사소한 변수에서 거대한 균열과 이합집산이 시작되는 게 정치판이며, 그 사소함에 섬세할 수 있어야 살아남는 게 정치판이니까.

2-1.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 BSA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로 번역될 수 있는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지난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MS)·로터스·어도비시스템스 등 다국적 SW업체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미국 SW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이익단체다. 컴퓨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계몽과 통상기회 확대를 위한 대정부 로비, SW불법복제 단속 등을 펼치고 있으나 회원사들이 주로 패키지 SW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불법복제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BSA는 1994년 이후 매년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가별·지역별 SW불법복제율 조사를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IPR사에 의뢰하는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에 국가별 통상압력을 건의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 직접 시정조치를 촉구하기도 한다. BSA 말고도 민간단체로 SPA(최근 IIA와 합병해 SIIA로 확대 개명)가 있다. SW업계에서 MS의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BSA 속에서 MS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일지 이해가 가지요?

국제지적재산권연맹 IIPA

IIPA는 소프트웨어·영화·음반·출판 등 지적재산권 관련 7개 협회의 연합단체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스페셜 301조란 지적재산권 분야의 슈퍼 301조에 해당되는 것. IIPA는 올해도 한국의 지적재산권 실태에 대해 보호 정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USTR에 제출했다. 그리고 그대로 됐다.

PWL은 감시대상국(WL)보다 수위가 높고 미국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우선협상대상국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말 그대로 여전히 구린 데가 있으니 자세히 감시해 보겠다는 의미.

무역대표부 USTR

미국 상무성과 함께 SW 저작권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두 톱. 한국과의 통상협상에 대표로 나서는 USTR은 BSA와 같은 자국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IIPA의 보고서를 충실히 받아들여 한국과의 통상협상에 임해왔고 지금까지 백전백승.

2-2. 한국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

SW개발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단체. 지난 1993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산하 기구로 소프트웨어 재산권보호위원회(SPC)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1999년 10월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검찰 혹은 경찰과 SW 불법복제 단속팀을 구성해 상시적인 단속업무를 펼치고 있다. 국내 불법복제율 조사나 정품사용 홍보·교육 등도 한다. 회원사로 대주주인 MS 뿐만 아니라 한글과컴퓨터·나모인터랙티브 등 국내의 대표적인 SW업체들도 소속되어 있지만 김정 회장이 MS의 총판업체 사장이고 김규성 사무국장이 한국MS 출신이라는 점 등에서 MS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강우식 고문변호사가 BSA의 한국 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음에서 SPC와 BSA의 관계 또한 유추할 수 있다.

한국 BSA

국내 지사는 SPC가 활동을 본격화한 지난 2000년 철수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 있는 아태지역본부에서 국내 홍보대행사와 계약하고 홍보업무만 펼치고 있다. 미국의 이익단체가 한국에서 직접 활동하는 것보다 한국의 이익단체인 SPC를 통해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 하지만 국내 지사는 철무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BSA는 사실상 존재한다. 한국 MS의 오석주 이사(국제변호사)가 고문변호사 겸 수장 역할을, 한국 MS의 권오규 부장이 실무를 맡고 있다.

한국 MS

미국 BSA와 한국 SPC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업체. 그렇다고 MS·BSA·SPC 삼총사가 항상 사이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의 묘미가 있다. 2001년 3월 국내 12만여 기업에 협박성 문구와 그림이 담긴 포스터가 발송된 사건을 살펴보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발표에 따르면 BSA 명의로 만들어진 이 포스터는 BSA 아태지역본부의 제안에 따라 한국 MS가 직접 만들어 발송한 것. 이 사건으로 한국 MS의 오석주 이사와 권오규 부장은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지만 포스터에 연락처가 명기된 SPC측은 이 포스터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태가 심각해진 뒤에야 "SPC는 우편물 발송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포스터 취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내부적으로는 MS와 BSA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했다는 후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 내부에 있다가 지난 6월 25일 독립기관으로 새 출발하며 SW 불법복제 방지활동을 강화했다. 다른 정부부처에 앞서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주도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결과. 새롭게 사무국 및 연구실과 함께 상설 단속지원팀을 구성, 정품 소프트웨어 상담 및 불법 복제 단속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게 됐다. 심지어 와레즈 사이트 등 온라인의 불법복제에 대해선 자체 단속권을 갖게 될 정도로 막강 권력을 얻어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신지적 재산권 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미국대사관과 함께 미국 정부에는 통상압력에 필요한 한국내 주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매년 발표하는 '연례 무역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중 대외통상정책을 결정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에 매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의 연례 무역 보고서에는 SW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3. 1999년과 2001년

2001년의 특별단속을 이해하기 위해선 2년전인 1999년에 벌어진 특별단속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닮은 꼴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계의 공통분모를 뽑아낼 수 있다. 닮은 모양새로 우선 미국의 스페셜 301조에 따른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을 받고 특별단속을 벌였다는 점이다. 또한 대통령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 표명을 계기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있다. 1999년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남궁석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1백% 정품SW를 구입, 사용토록 해달라"고 지시하면서 4월까지 두달간 단속이 이뤄졌다.

정보통신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속하기 위해 1백명으로 구성된 단속지원반을 편성했다. 이 단속지원반에는 체신청·전산관리소·한국전산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했다. 검찰도 4월부터 대검과 각 지검에 지적재산권 단속반을 구성해 정보통신부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합동단속에 투입했다. 한편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속이었던 SPC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봐서 '정통부+검찰', 'SPC+경찰'이라는 두 개의 단속반이 활동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알뜰게도 스페셜 301조를 그대로 적용,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버렸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법집행의 투명성 문제다. USTR은 특별단속에서 한국과 미국 외의 나라에서 개발된 SW가 배제된 점, 민간전문가의 기술지원이 제외된 점, 단속 대상과 결과의 미공개, 그리고 지속적인 법집행 미비, 한국산 SW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들보다 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행태와 원칙없는 주먹구구식 행정 등이 실제로 한국 정부를 못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01년도 지난 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 SW를 철저히 근절하라고 지시한 이후 유례없이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여전히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될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보통신부는 검찰과 함께 21개조 89명의 단속팀을 구성해 5월까지 단속했고, SPC는 경찰과 합동으로 4개조의 단속팀을 운영했다.

2001년 특별단속은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계속해서 압력을 받아왔던 불법 SW 문제에 대해 근절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통상 외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를 통해 MS 등 다국적 SW업체들이 한국 정부에 가해온 압력도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국내에 진출한 다

국적 SW업체들도 국내 대규모 입찰에 참가하거나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정부 해당 부처로 공문(레터)을 보낼 정도로 통상압력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 지경이니까.

하지만 정치적 주체끼리의 관계는 결코 단선적이지 않다. 오히려 시기에 따라 미묘한 진폭을 갖게 마련이고, 그 미묘한 차이가 때론 정치적 행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도 한다. 2001년 특별단속을 유난히 요란하게 만든 정치적 변화에선 정보통신부가 바로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4. 오버하는 정부, 광분하는 정통부

2001년의 특별단속이 1999년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만큼 갑작스럽고 요란하게 펼쳐진 이유는 일단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사표명 덕분이었다. 3월 6~10일 이뤄질 방미를 보름여 앞두고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법복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으로 정부의 확고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강경 발언은 분명 외교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그 단호한 어조는 정보통신부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다.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과학기술부 등 다른 정부부처 3곳과 관련 부서간 영역다툼과 힘겨루기에 한창인 정보통신부 입장에선 신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이 언급될 때마다 없어야 할 부처 1순위로 거론돼온 정보통신부 입장에선 한바탕 허드러지게 잔치판을 벌이며 존재 근거를 내세우고 싶었을 터.

요란한 잔치판에 놀란 전문가들은 전시적인 특별단속에 회의를 표시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최고지인 만큼 불법복제 문제를 권리자와 침해자 그리고 사법당국이 적법한 법 절차를 통해 단속하면 될 것이지 전문성도 없는 행정부처의 다른 인력들까지 대거 투입해 온나라가 떠들썩하게 단속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

하지만 힘을 한 번 받은 정보통신부는 특별단속을 계기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에 정신이 없다. 우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해 산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등을 통한 프로그램 부정복제물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삭제·폐기하고자 할 경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운영자에게 삭제·폐기 통지를 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친고죄지만 이해당사자의 고발이 없어도 수시로 단속에 폐쇄조치하고 사이트 개설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정통부 공무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다른 부처와 기관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그동안 검찰·경찰·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단속활동을 펼쳐왔지만 앞으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산하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속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가 이처럼 강력한 단속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국민기본권 침해와 수사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SPC도 "이용자와 저작권자간 저작권 분쟁 발생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업무를 심의, 조정해야 하는 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권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탁관리 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분쟁조정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반대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 성명서에서 SPC는 "정통부 산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가기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5. 헛갈리는 시민단체와 언론

특별단속이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모순이 터져나왔다.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몇몇 언론에

서 문제제기에 나섰다. 그러나 복잡하고 섬세한 정치 관계에 대한 이해없이 거칠고 단순한 반론들은 오히려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우선 특별단속 기간동안 시민단체들끼리 이뤄진 논의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들은 먼저 합동단속반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단속과정의 '불법행위'에 주목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앞에 두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 청와대가 움직이는, 그야말로 알아서 가는 행정의 전형적인 표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적인 모순과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선 혼선을 빚고 말았다. 우선 특별단속을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해석하고 통상압력의 주체인 국제무역기구(WTO)를 공격하자는 입장이 있었다.

두번째는 SW업계의 다국적 독점기업인 MS에 모순의 무게를 두고 사실상 꼬봉 역할을 하는 SPC를 공격하자는 입장이 있다. SPC가 정당한 고소나 신고에 의하지 않고 정부기관을 앞세워 마구잡이 적발에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독자적으로 사법권을 사칭하고 있는 것은 MS 등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언론까지 이러한 논조의 기사를 실어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첫번째는 총론적 이해일 뿐이지 구체적인 정치행위에 대응하는 각론적 행동(action)에선 채택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두번째는 특별단속을 둘러싼 정치적 관계와 각 정치적 주체의 욕망, 불법복제와 관련된 국내 법률 내용과 절차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은 일단 불법복제 단속의 근거가 친고죄라는 것, 즉 이해당사자인 SW업의 고소·고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몰랐거나 오해했다. 사실 사적인 재산권 문제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고, 절차상 SW업체들의 대리인격인 SPC의 고소·고발이 있고 난 뒤에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단속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자체 단속권이 없는 정통부·검찰·경찰 등 정부가 고소·고발의 주체인 SPC를 이용해 단속 대상을 임의로 정하는 행위와, 심지어 고소·고발의 형식도 빌리지 않고 영장없이 임의수사하는 행위를 같이 비판했어야 했다.

그러나 심각한 오해는 SPC를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민간단체를 배제한 순수한(!)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여론에 편승한 정보통신부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참에 자체 단속권을 갖겠다는 황당한 시도까지 하게 된다. 한마디로 자본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가 공권력을 무한대로 키워준 결과를 낳은 것이다.

6. 마치며

다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보자. 정부는 왜 불법복제 SW 단속에 열을 올릴까?

방미를 앞둔 대통령의 외교적 제스처, 정부부처간 경쟁에서 이기려는 정통부의 안간힘, 미국 무역대표부의 압력, BSA·IPA 등의 로비, 단속으로 먹고 사는 SPC의 눈치, 그 모든 배경의 근원 MS 등.

나름대로 각 정치적 주체들의 계산법이 떠오를 뿐, 명쾌한 해답은 없고 답답할 지도 모른다. 차라리 다들 나쁜 놈이라고 해버리면 맘이라도 편할는지 모르겠지만 홀로 독야청청해서야 해결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각각의 이해가 제각각이고 계산법이 똑같지 않듯이 분석도 입체적이고 대응도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평소엔 불법복제 SW 단속이 미국과 국내 IT업계를 함께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경제 대통령에겐 오히려 경제적 역효과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자신의 존재 근거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원하는 정통부에겐 MS·SPC 등 기업측 로비에 대항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MS·BSA 등을 대신해 미운 짓을 도맡은 SPC도 정부의 오버를 견제하기엔 제격이다.

정치적 관계 속에서 정치적 행동을 하려면 철저히 정치적이자.

한국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천국인가?

김인수(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회원)

1. 63.66% vs. 9.5%

지난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사상 유래없는 대규모의 단속이었던 만큼 이번 불법복제 단속 결과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직 소프트웨어를 돈주고 사서 쓰는 문화가 익숙치 않은 우리들이기에 외국으로부터 한국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고도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넘겨왔지, 한번도 우리 손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도대체 얼마인지 제대로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더욱 의미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단속에 참여했던 검찰과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 이하 SPC) 두 기관이 발표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검찰에서 발표한 불법복제율은 약 9.5%¹⁾인 반면, SPC에서 발표한 불법복제율은 63.66%²⁾로 무려 6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미국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협회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SPA(Software Publishers Association)의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면, 검찰의 발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낮은 국가라는 것이고, SPC의 발표대로 라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세계 상위 30위권(2000년 기준)으로 가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검찰이 단속한 업체와 SPC가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검찰에 고소한 업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이 조사한 불법복제율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실시한 단속 결과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상반된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보면, 검찰과 SPC 둘 중 한 곳은 불법복제율을 축소하였거나 또는 부풀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어느 수준일까? 또 도대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어떻게 조사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수치를 따라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걸일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보고자 한다.

2.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어느 수준인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999년에 이어 2001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서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를 포맷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개인 사용자들도 누구나 한번쯤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

1)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결과, 대검찰청 형사부 보도자료, 2001.5.

2) SPC 홈페이지(<http://www.spc.or.kr>), 소프트웨어 저작권 2001년 6월호.

제 5 장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 문제점과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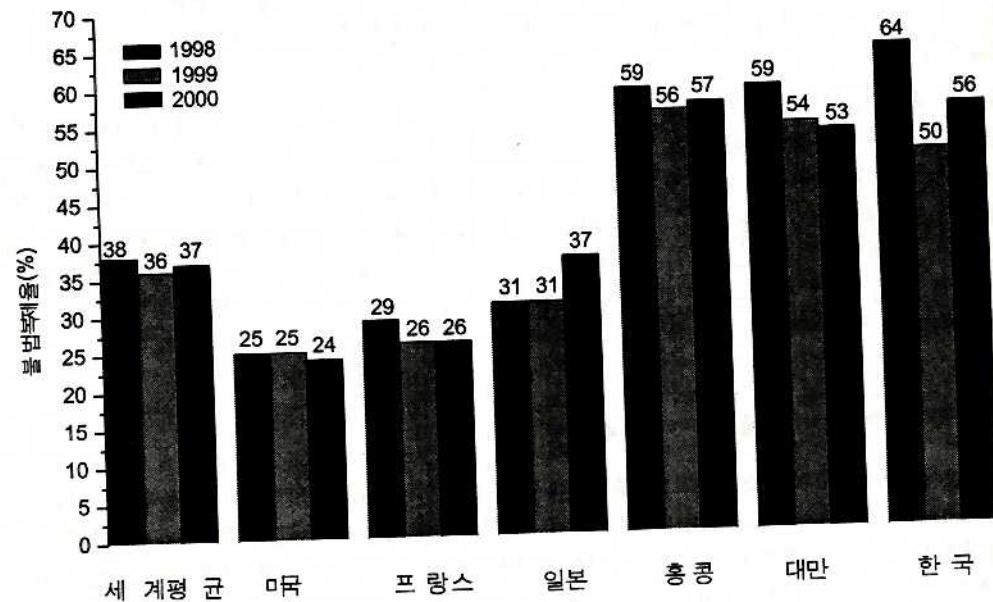
다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과연 어느 정도이며,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 까?

SPC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1998년 65%에 이르던 것이 2000년에는 54%로 불과 2년 만에 11%³⁾ 가 낮아졌다. 이런 경향은 대대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힘입어 2001년에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이는 BSA/SPA가 조사한 결과와도 비슷한 수치이다. BSA에 따르면, 2000년 한국의 불법 복제율은 56%로, 1996년 70%에 비해 14% 낮아졌으며, 이는 세계 평균 37% 보다는 높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51%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홍콩(57%), 대만(53%), 싱가포르(50%)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OECD에 가입된 29개국과 비교하면 8~10위권이다⁴⁾.

50%가 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그 수치만 놓고 본다면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들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30% 선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점과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비슷한 점으로 보면(표1 참조), 그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은 과장된 것이라도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번 검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9.5%로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조사대상 2315개 업체 중에서 불법복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1024개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며, 불법복제품 비율이 10% 이하인 업체가 지 포함하면 전체 62.3%라는 것이다(표2 참조). 즉 그동안의 예상과는 달리 많은 업체에서 정품 사용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많은 업체들이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단속을 펼쳤기 때문에 허둥 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많은 업체들이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단속을 펼쳤기 때문에 허둥 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많은 업체들이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단속을 펼쳤기 때문에 허둥 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1. 세계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BSA, 2001년)



3) 김규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 및 대책,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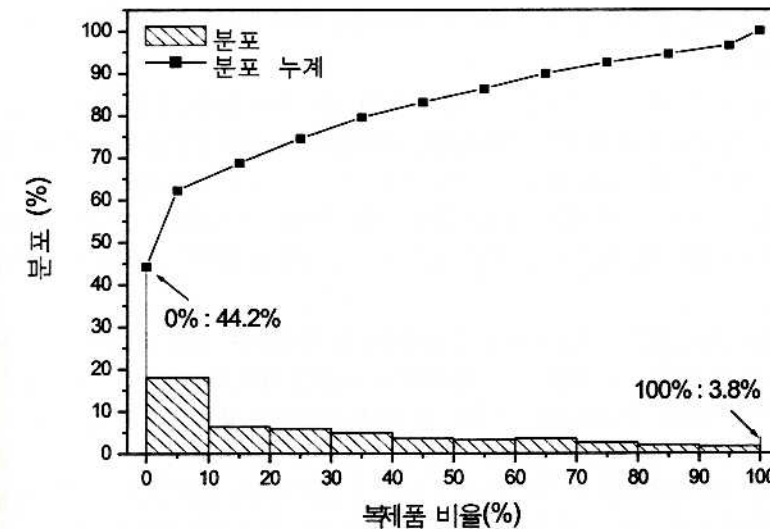
4) 자료출처 : <http://alpha.cpf.or.kr/bbs/bsa2000.html>

표 2. 발표한 2001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결과 (검찰, 2001년)

1) 전체 단속현황

단속대상업체	PC 수량	설치 SW	정품 SW	복제 SW	복제율(%)
2,315	99,867	359,090	324,909	34,181	9.5

2) 복제품 비율별 단속현황



그렇다면 도대체 BSP/SPA와 SPC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길래 검찰의 결과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제부터 BSP/SPA와 SPC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방법과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조사방법과 문제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PC에 설치된 총 소프트웨어와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의 비율을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한 곳의 불법복제율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라 전체의 불법복제율을 조사한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온 나라의 PC 전체를 다 조사할 수도 없고,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위법이고, 더구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임의로 몇 곳을 샘플로 선정하여 통계 조사하는 방법도 이후 조사대상의 처벌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SA/SPA에서는 PC 판매량을 소프트웨어 수요량으로, 소프트웨어 판매량을 공급량으로 파악하여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추정한다. 반면 한국의 SPC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통해 샘플조사된 불법복제율을 계산하므로 사실상 기업용 PC의 불법복제율이라 할 수 있다.

1) BSA/SPA⁵⁾

BSA/SPA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는 전문기관인 IPR(International Planning & Research Corpor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IPR은 신뢰성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추정을 위해 "새로운 응용 소

5) 김광용, BSA/SPA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추정방법에 대한 조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

프웨어에 대한 수요"와 "새로운 응용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공급"의 두 자료를 비교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BSA/SPA의 회원사가 비밀리에 수집한 미시경제 자료와 판매자료를 기초로 불법복제율을 추정하였다.

이 방법은 먼저 PC 판매량을 소프트웨어의 수요량으로 파악한다. PC 판매량은 가정용과 비가정용으로 구분되고, 각각에 대해 신규 판매와 기존에 보급된 PC를 대체하는 대체용 판매로 구분된다. 다음 각 국가의 기술발달 수준에 따라 측정된 PC 보급률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각 나라를 다섯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각 나라에 사무직 근로자 수 미국의 역사적 흐름자료 등을 이용하여 앞에서 분류한 네 가지 PC 판매량의 비율을 할당한다. 마지막으로 불법복제율은 응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일반적 응용 프로그램, 전문적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불법복제율을 추정한다.

공급자료는 위에서 분류된 소프트웨어의 종류별, 국가별로 수집된 BSA 회원사의 판매자료를 통해 수집된다. 이 자료는 BSA 회원사들의 자료이므로 미국 전체의 소프트웨어 판매량과 전 세계 소프트웨어 판매량을 추정하기 위해 1) 불법복제 연구에 참여한 회사들이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 모든 미국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의해 판매된 소프트웨어 판매율, 2) 미국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의해 판매된 소프트웨어 대 모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의해 판매된 소프트웨어 판매율이라는 특별 요인을 적용하여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추정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수요와 공급 자료의 차이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추정한다. 모든 국가의 수요 공급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할 수 없고 한 나라에서 생산된 소프트웨어가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가의 정보와 주변 국가의 통합정보로 구성된 전 세계 판매량을 함께 수집한다. 주변 국가의 PC 판매량은 회원사의 내부 자료나 다른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 추정되며, 소프트웨어 판매 자료는 통합정보에서 주요국가의 판매량을 제외한 판매량을 나머지 지역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판매량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 다양한 불법복제율이 산출되며,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지역의 국가들은 비슷한 지역의 불법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BSA/SPA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조사방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반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통계 처리를 해서 불법복제율을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급자료는 미국 회원사만의 판매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국가별 기준치 적용의 세부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복제율을 투명하게 믿을 수 없다. BSA가 공적기관이 아닌 이익단체이므로 더더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산정방법이 매우 추상적이며 주관적이다. PC 보급률과 기술수준의 국가별 분류 등 매우 모호한 기준에 의한 계량화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다분히 조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과가 조작될 수도 있다.

BSA/SPA에 따르면 1999년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50%였으나, 2000년에는 56%로 오히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Special 301조에 의해 1999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Watch List)이던 것이 2000년에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한 단계 낮춰졌다. 과연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증가한 것일까? 1999년 봄에도 정부 합동 단속이 있었고, 1999년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정부 주도의 국민PC 사업에 의해 실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품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가 대량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기업 사용자나 개인 사용자 모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증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SA/SPA가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상향시킨 것은 PC 보급률과 기술수준이 증가하는 신흥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확한 실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가 아닌 과거 미국 시장의 역사에 각국의 시장자료를 대입해 추정된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신흥시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BSA/SPA 회원사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셋째, 수요/공급 자료의 단순한 비교에 의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PC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PC 판매량만 가지고 신규 PC인지, 대체용 PC인지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한글 워드프로세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몇몇 필수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밀어내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판매 자료와 더불어 시장점유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MS Word의 경우 외국에서는 신규 PC 구매의 경우 거의 모든 PC에 설치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기업사용자를 제외하면 거의 한글을 사용하므로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는 MS Word의 불법복제율을 추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2) SPC

SPC의 불법복제율 계산 방법은 SPC에 의해 고소된 회사의 총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와 총 사용 소프트웨어의 비율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SPC는 표본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SPC 역시 정확한 불법복제율 집계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그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SPC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집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의 문제이다. 보통 SPC는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그러다 보니 SPC가 집계하는 불법복제율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진도에 갔더니 10집중에 5집에 진도개가 살더라. 그러니 우리나라의 전체 개 중 50%가 진도개다'고 하는 것이다.

SPC에서 발표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단속과정의 불투명성과 일관성이 없는 법적 용이 있다. SPC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조사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변수로 인해 정확한 불법복제율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문지상에 알려진 내용⁶⁾과 현장 단속반과 기업의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자.

사례 1

단속대상이 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100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중 정품으로 입증된 게 50개뿐이다. 이 경우 불법복제율은 50%다. 그러나 진술서에는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수는 50개, 정품 소프트웨어는 20개로 둔갑한다. 따라서 불법복제율은 60%로 올라간다. 단속을 맡은 경찰과 SPC 입장에서는 불법복제율을 높여 일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좋고, 단속을 받는 업체에서는 불법복제품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합의금이 줄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사례 2

단속반이 컴퓨터를 200대 사용하는 기업에 들어갔다. 100대 정도 점검하더니 단속이 끝났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수를 입증하는 원본 시디롬이나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한다. 업체에서는 160개를 정품으로 증명하였다. 진술서에는 컴퓨터 100대에 깔린 소프트웨어가 200개이고, 이 가운데 정품으로 인정된 것은 160개이고, 불법복제율은 20%라고 기재된다. 그러나 200대를 모두 검색했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 수는 400개로 늘어나고 불법복제율도 40%로 증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소수의 단속반이 많은 업체를 단속하다 보니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례 3

6) 김재섭, 못믿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한겨레신문 2001년 4월 9일자.

단속반은 단속을 끝내면 각 소프트웨어 별로 불법복제율을 집계한다. A라는 소프트웨어를 100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불법복제된 제품이 30개이며, B라는 소프트웨어를 10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5개가 불법복제된 제품이라면, 총 130개 소프트웨어 중에서 35개가 불법복제된 것이므로 불법복제율은 약 32%가 된다. 그러나 단속반의 집계결과는 A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30%, B 소프트웨어 50%를 평균 내 총 불법복제율은 40%로 둔갑한다. 여기에 불법복제가 한건도 일어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불법복제율 계산에서 아예 누락시켜버린다. 이렇게 되면 불법복제율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물론 위의 세 가지 사례가 모든 단속상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SPC의 활동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목적이지만, 정확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조사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집계방법을 선불리 비난할 수도 없다. 그러나 SPC가 집계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정부 정책수립에 참고가 되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SPC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4. 불법복제율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BSA/SPA와 SPC가 발표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그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마치 정확한 통계수치인 양 발표하며, 정부와 업계는 이들 수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정부와 업계가 한 목소리로 높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9.5%라는 검찰의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001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업계의 매출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힘입어 200~300%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누가 뭐라고 해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의 수혜자는 관련 업계라고 할 수 있다. BSA/SPA와 SPC는 이들 업체들이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익단체이다. 따라서 BSA/SPA와 SPC로서는 불법복제율을 되도록 크게 산정하여 피해금액 추정치를 크게 발표하고 싶을 것이다. BSA는 2000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전 세계의 피해금액은 117.5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엄청난 불법복제 피해금액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할 목적일 것이다.

실제 정보통신부는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들어, 1999년 말 50%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감소시킬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의 매출이 2조 6600억원 가량 증가하며, 산업간 파급되는 효과를 놓고 봤을 때 국민생산이 4조 2800억원 증가하는 생산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 정보통신부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뼈대를 이루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규모가 2000년 현재 9조 2천억에서 2005년에는 37조 1850억원으로 성장하여 세계 7위권의 소프트웨어 강국의 대열에 진입하는 장미빛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이렇게 BSA/SPA와 SPC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업체들의 이해를 옹호하는 BSA의 경우는 정보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한국은 시장 잠재력이 크고, 아시아 신흥 시장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해 1999년에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이던 것을 2000년에는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려놓았고, 2001년 역시 우선감시대상국 등급을 유지하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명분은 정품사용을 장려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 육성시켜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BSA/SPA와 SPC의 로비와 압력과 더불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낮추려고 하는 계산이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검찰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낮은 불법복제율을 발표한 것은 2001년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다.

표 3. 미국 Special 301조 관련 지정 현황

지정연도	1989	1990~1991	1992~1996	1997~1999	2000~2001
분 류	PWL	WL	PWL	WL	PWL

PFC :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협상대상국)

PWL : Priority Watch List (우선감시대상국)

WL : Watch List (감시대상국)

5. 다치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9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BSA와 SPC에서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니, 매출보다 복제로 인한 업계의 손실이 더 많은 셈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손실금액이 9조원이 넘는 것이니 정말 심각해 보인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국민경제를 쪼먹는 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이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으니, 국민들은 좀 불편하고 인권이 침해받더라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협조하고, 또 소득이 줄어 살림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비싼 소프트웨어지만 돈 주고 사서 써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 법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50%가 아니라 9.5%라니, 어떤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고 그동안 속아왔다는 배신감마저 든다.

그러나 이보다 큰 문제는 엉터리 통계수치를 근거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된다는 것이다. 업계와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제시하는 통계 숫자와 압력, 그리고 로비에 의해서 국민경제의 기본 계획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업계에는 이익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 의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만약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통상마찰의 중요 이슈가 되고, 진정으로 국민경제를 쪼먹는 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조사기관을 이해관계가 없는 공적기관에 맡겨 합리적인 불법복제율 조사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생산/소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오병일(IPLeft 회원/진보넷 사무국장)

1. 신화를 깨자!

올해 2001년 3, 4월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다. 주된 비판은 단속의 방식이 불법적, 그리고 폭력적이었던 것, 그리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홍보 및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정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듯 하다. 즉,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복제는 없어야 하며, 정품 구입의 풍토가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세계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대해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국내 상황에 맞는 문화와 제도란 저작권 강화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소프트웨어 생산/소비구조의 모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고민해보도록 한다. 물론 대안은 이미 정해져있거나, 어떤 한 집단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유하는 작업이다. 더구나 현실은 '무한경쟁'의 이데올로기가 '저작권 보호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변주를 하며, 그것을 뛰어넘는 반성적 사고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대부분의 논의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의 의도는 우선 이러한 '신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데 있다.

2. 소프트웨어 생산/소비 구조의 문제점

1) 공공성의 훼손

전통적으로 수도, 전기, 전화 등은 공공재로서 인식되어왔다. 즉,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화으로써, 경제적, 지리적 여건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민영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수도, 전기, 전화 등을 생산, 보급하는 회사는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어왔다. 비록 수익성이 없는 산간벽지와 낙도일지라도 '보편적 서비스'라는 원칙에 의하여 수도, 전기, 전화 설비를 제공해왔던 것이다. 이는 '최대한의 이윤창출'이라는 사기업의 논리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운영체제 및 워드, 통신 프로그램 등은 정보사회의 공공재라고 인식한다. 즉, 정보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차이로 재생산되는 정보사회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최소한의 정보 접근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지 '상품'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공공적 소프트웨어(필수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자신의 의무는 도의시한 채 이용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필수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다국적 독점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자. 먼저, 공공적 소프트웨어는 단지 가격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MS가 윈도의 가격을 천원 정도로 인하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도를 쉽게 사서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이익일 뿐, 사람들이 더욱 더 MS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공공적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상업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방식으로 - 예컨대, 리눅스가 기본 운영체제로 자리잡는다거나, 혹은 MS가 윈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등 -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공공재인가하는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적어도 워드 프로그램보다는 운영체제가 더욱 공공적이다. 그래픽 프로그램보다는 워드 프로그램이나 통신 프로그램이 더욱 공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수한 환경에서 쓰이는 프로그램보다는 범용 프로그램이 공공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MS의 운영체제 독점은 공공 소프트웨어에의 접근권 문제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 먼저 한 국가의 주요 운영체제가 특정 다국적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마치 식량 무기화의 위협에 대비해 경제 논리를 떠나 자국의 식량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운영 체제를 해외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정보 사회에서 식량문제 이상의 위협성을 안고 있다. MS의 기술, 서비스 정책에 따라 국민 전체의 컴퓨터 사용 방식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격,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MS 프로그램은 소스가 공개되어있지 않으므로, 보안의 측면에서도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도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의혹을 끊임없이 낳고 있다.

MS의 독점은 시장에서의 많은 불공정행위를 낳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반독점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최근 윈도 XP의 출시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MS의 독점이 더욱 강화됨과 동시에, 경쟁업체들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윈도 XP는 운영체제 내에 인터넷, 메신저, 백신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MS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부가 MS에 대한 의존성과 보안 문제를 우려해 리눅스를 채택하기로 한 기사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²⁾

2) 소프트웨어 보호방법의 타당성 문제

설사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제작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제작자 보호라는 명분을 넘어서, 많은 사회적 불합리와 다른 권리의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³⁾

1)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주철민 글 참조.

2) [뉴욕타임즈] "중, 윈도배격 리눅스 채택", 서울경제, 2000. 7. 9

먼저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점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이는 저작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문화, 예술 창작물과 다른 성격을 갖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낸다. 첫째, 소프트웨어는 창작물이라기 보다는 기능적 저작물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 개발 과정에서도 흔히 쓰는 코드들의 조합/결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 혹은 구체적인 환경에 따른 변경을 요구한다. 따라서, 처음 프로그램을 창작한 특정 개인/조직에 독점되어있는 것보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개발과 활용의 양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셋째, 다른 저작물의 경우 소스 자체가 오픈되어, 저작권이 보호되더라도 그 내용으로부터 다른 창작을 유도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경우 소스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다른 창작물의 생산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로지 생산자의 이익만을 보호할 뿐이다. (물론 코드의 공개와 저작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의 코드는 공개되지 않으며, 코드를 이용할 자유 역시 부여하지 않는다.) 넷째, 소프트웨어의 경우, 빠른 기술발전으로 제품 생명이 짧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은 지나치게 길다. 즉, 저작권 보호기간 이후 공중에 환원되는 이익이 거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저작권 체계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과 그 보호대상과 방식이 다르다. 즉,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데 반해, 특허는 '방법', 즉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기술이나 알고리즘을 보호한다. 특허 보호기간은 출원 후 2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에 비해서 짧지만,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소프트웨어의 독점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특허는 특정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를 보호하므로 그 보호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개발자가 스스로 어떤 알고리즘을 고안해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알고리즘이 특허에 걸려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개발자들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는 수많은 알고리즘과 기법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만일 소프트웨어 특허가 허용된다면,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 전에 어떠한 알고리즘이 특허에 걸려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고, 그것을 피해 프로그래밍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는 기존의 특허 기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하며, 거대 기업의 독점만을 강화할 것이다. 거대 독점 기업은 설사 다른 기업이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구입 혹은 상호 라이선스(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피해나갈 방법과 재원이 제약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허 제도 없이도 이미 빠른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굳이 특허를 통한 독점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3) 이용자의 측면에서의 불합리함

소프트웨어는 자기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타인의 소프트웨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여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LG 세탁기를 샀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강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LG 세탁기든, 삼성 세탁기든 그 장단점을 잘 따져서 나의 선택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나는 한글을 더욱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내준 워드 문서를 읽기 위해서는 MS 워드가 필요하다. 경쟁 제품이 2개 이상이라면 더욱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개인적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른 디지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역시 기술적으로 무한 배포가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이 그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 무한 배포가 가능하면, 누가 생산하겠느냐는 질문은 특정한 생산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저작권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3) 여기서는 주요한 문제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남희섭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는 것이다. 불법복제의 피해에 대해서 언급할 때, 통상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거나, 정품 사용으로 인한 GNP 및 고용의 증가 등의 추정치를 제시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비용의 증가나 (정품 구입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었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창작의 제한에 따른 손실은 왜 계산하지 않는 것일까? 또한, GNP의 산술적 액수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예컨대, 서버 시장에서 리눅스가 3~4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MS와 비교한 매출액의 차이는 천문학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다. 즉, 산술적인 액수의 차이와 사회적인 영향력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4) 개발자들의 문제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의 생산에 있어서 실제 개발자들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그들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일 뿐이다. 그리고, 저작권, 특허 등의 강화는 제작회사에게는 이윤을 가져다줄 수단일 수 있지만, 실제 개발자들에게는 개발을 제한하는 요소일 뿐이다.

무엇보다 개발자들 사이의 공유의 문화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 리처드 스톨만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을 설립하고, 그누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경향에 아픔을 느꼈기 때문이다. 제작자들에게는 그들의 투자에 대한 최대한의 수익 보장이 가장 중요할지 몰라도, 개발자들 사이의 공유의 문화는 잃어서는 안되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현재 오픈 소스는 단지 개인의 자발적 작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즉, 소스의 공개를 전제로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생산의 시장경쟁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와 룰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시장은 무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인간적 가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제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 보호 장치를 요구하거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최저 임금, 혹은 적절한 복지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당연히 이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에게 환경 조항, 노동조항이 강제된다면, 이는 기업활동을 하는 동일한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스의 공개 역시 모든 기업들에게 강제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없을까? 나아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공공성과 인간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점이 없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3. 네안적인 소프트웨어 생산/소비 구조를 위한 제안

1) 소프트웨어 보호 관련 법의 개정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특정한 기법과 같은 추상적 아이디어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부여된 특허는 재검토하여 무효화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가 허용되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체계로 보호하는 것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합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저작권이나 특허권의 보호기간-저작권 보호기간 50년, 특허권 보호기간 20년-은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급속히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보호

4) [디지털은 자유다]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FLet, 이후) 참고.

기간은 사회 공공의 이익보다 지나치게 제작자의 이익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일종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인 '원-클릭' 기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던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조스 역시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허 기간이 너무 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2) 카피레프트 운동

카피레프트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의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 고안된 일종의 라이선스이다. 카피레프트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먼저 저작권(Copyright)을 설정한 후,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덧붙이는 것인데, 이는 저작물을 복사, 수정, 재배포할 자유를 부여하지만, 수정된 저작물을 재배포할 경우 그 저작물 역시 GPL을 따라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카피라이트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악용을 막고,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카피레프트 운동은 현행 저작권법 체제와 모순없이 작동하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⁵⁾

3) 필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정보사회에서 인터넷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 워드, 통신 프로그램 등은 필수 소프트웨어로서 누구나 쉽게 이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가격의 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전술했듯이 가격의 문제만은 아니다. 특정 기업에의 종속을 탈피하고, 보안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와 같은 열린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로 가야한다.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비용 절감 및 기술력 향상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12만개 초, 중등학교 컴퓨터 실습실에 리눅스를 설치해 모두 144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하며⁶⁾, 중국 정부도 MS에의 종속을 탈피하고, 보안 문제를 우려해 리눅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캠페인, 교육 사업을 확장하라. 그리고, 국가지원 연구소 등을 통하여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하라.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리눅스를 포함한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철학 및 이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
-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부터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나가야 한다.
-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라.

물론 리눅스가 서버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데스크탑으로 쓰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MS 윈도의 대안으로 전망될만큼, 현실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 장기적 안목에서 리눅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4) 소프트웨어 가격의 현실적 인하

5)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ILeft 홈페이지(<http://yleft.or.kr>)와 GNU 홈페이지(<http://www.gnu.org>)를 참조하라.

6) 내외 경제, 2000. 9. 2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 정책대안으로 소프트웨어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끼고 있으며,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높은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강압적인 불법복제 단속에 앞서, 소프트웨어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현실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단지 법-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의식적 구조로 내재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법-제도는 하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에 비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근본적인 만큼의 혼란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큰 장벽은 이미 국내에서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있다. 오히려,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보수성을 합리화하기는 어렵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정책입안자들은 지적재산권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오히려 강화되어가는 경향은 사실 기존 기득권 세력의 의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부록 : 카피레프트 FAA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아본다.

1) 카피레프트는 불법복제와 어떻게 다른가?

불법복제는 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카피레프트는 원 창작자가 자신이 생산한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카피레프트는 현 저작권 제도와는 다른 메커니즘, 혹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불법복제의 경우 나쁜 의미에서 보자면 공짜를 원한다는 점에서 무한 수익을 추구하는 저작권자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지식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나키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복제로 규정되는 것은 현실 법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일뿐.

2)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창작의욕이 소멸되지 않겠는가?

창작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 소프트웨어든 다른 문화예술 창작물이든 창작하고 싶은 사람은 창작을 한다. (관심이 없다면, 창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만, 저작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상품화하고자 하는 투자자, 제작자의 의욕은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픈 소스와 같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카피레프트와 같은 자발적인 소프트웨어 생산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는 현재보다 늦어질 수도 혹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사 발전 속도가 늦어진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관계'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사실상 미국 등 선진국 등과의 협의, WIPO 및 WTO TRIPs 등 국제조직,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한다는 것은 역관계상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창작의욕이 소멸된다는 허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자라는 것이다.

3)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상받는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소프트웨어로 떼부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굶어죽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누구나 소프트웨어의 이용, 혹은 특정한 상황에의 최적화에 능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며, 그들은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개발자들에게 '보상'이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을 돕는다는 기쁨, 사회적 명성, 혹은 개발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등이 모든 것들이 보상이라면 보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어떠한 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되느냐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초기 인터넷이 그러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라는 문화적 분위기의 형성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카피레프트 정복의 영웅만능 소프트웨어

제 6장 MS 독점과 OS 사회화

- 활동개요 / 280
- 성명서 :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281
-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자료집 / 283
 - 발제1 : 윈도XP와 닷넷,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 · 이혁 / 284
 - 발제2 : MS 반독점 소송의 발단과 전개과정 · 오승한 / 290
 - 토론1 : 한통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으면? · 김재섭 / 300
 - 토론2 : MS끼워팔기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임준운 / 303
 - 발제3 : 정보공유운동과 운영체제의 사회화 · 홍성태 / 304
 - 토론3 :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 · 주철민 / 308

활동개요

지난 2000년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이미 전세계 OS 시장의 90%를 장악하며 수 많은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2000년 6월 닷넷 전략을 발표하면서 향후 인터넷 시장의 완전한 독점을 꿈꾸고 있다. 닷넷 전략의 시작점으로 출시된 윈도 XP는 과거의 운영체제에서 한걸음 나아가 패스포트와 헤일스톤 시스템을 무기로 현재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인터넷 기반으로 하나로 통합함을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MS는 이러한 통합 독점 전략을 이용자들의 편의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력을 정당화시키며 이를 통해 이용자를 통제하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MS의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MS가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고, 윈도의 소스를 공개하여 그 이용과 활용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은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핵심 매체로서 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사유될 수 없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핵심 기반인 운영체제 역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독점을 규제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정보화의 기반을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정보의 이용과 소통의 핵심 기반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MS의 독점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IPLFT는 지난 2001년 12월 8일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윈도 XP의 문제점부터 MS의 반독점소송의 의미, OS사회화와 정부의 역할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각 사회영역에서 2002년 OS 독점 반대와 사회화 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성명서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이미 2000년 6월 닷넷(.Net)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윈도XP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S의 닷넷 전략은 모든 전자 기기들과 인터넷 서비스를 MS의 플랫폼과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MS에 등록된 하나의 ID만으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메일, 개인 주소록, 일정표, 그리고 다른 웹서비스에 접근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MS가 운영하고 있는 핫메일과 MSN 메신저에는 이미 패스포트란 이름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일부 적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MS의 닷넷 전략은 언뜻 정보기술의 총화로 보이지만, '감시와 통제'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MS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S가 요구하는 하드웨어 정보, 신용 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윈도XP 개인 사용자 버전은 불법복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MS에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게 되어있다. 또한 윈도XP에 포함된 각종 인터넷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신용정보 등이 포함된 사용자 정보가 MS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전 세계 윈도XP 이용자들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일개 기업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MS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가공을 통해 이용자를 감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를 독점한 MS는 내가 어느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지, 누구와 자주 메일을 주고받는지, 어떠한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행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MS는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MS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해킹되어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뿌려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MS는 자사의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아무 염려할 바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MSN 서버가 다운되는 등 보안 시스템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윈도95 버전부터 윈도2000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가정보부(NSA)의 비밀키 유무 논란이 끊이질 않는 등 국가권력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MS의 보안 문제는 아직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개인 정보는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분산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한 곳에 모아지고 데이터베이스화될 때 이는 곧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한 번 모아진 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용이하다는 디지털의 특성상 다시 분산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개인정보가 좀더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수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가 세계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유독 MS라는 회사와 이 회사의 특정한 제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MS가 정보화 사회의 핵심 기반인 컴퓨터 운영체제를 독점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운영체제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대다수 응용 프로그램이 그 운영체제에 기반할 수밖에 없게 된다. MS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윈도우95 버전부터 MS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경쟁업체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적이 있으며, 이번 윈도우XP에는 인터넷 폰, 메신저 프로그램 등 많은 응용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의 경쟁 업체들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MS는 닷넷 전략을 통해서 운영체제의 독점을 기반으로 더 많은 응용프로그램과 인터넷 서비스 전체를 독점하려고 있다.

이렇듯 MS는 '이용자들의 편의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력을 정당화시키며 이용자를 통제하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등 완전한 빅브라더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운영체제의 지배력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며, 이는 곧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 자체를 MS가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의 폐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편리성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편리성은 크게 제약받을 것이다.

우리는 MS의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MS가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고, 윈도우의 소스를 공개하여 그 이용과 활용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은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핵심 매체로서 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사유될 수 없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핵심 기반인 운영체제 역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독점을 규제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정보화의 기반을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정보의 이용과 소통의 핵심 기반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MS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제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스가 공개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개발 및 이용 증진에 특히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이들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MS는 윈도우XP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용자 인증제도 기능을 즉각 제거하라.
1. MS는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독점하려는 닷넷 전략에서 수정 또는 폐기하고,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소스를 공개하여 그 이용과 활용을 자유롭게 하라.
1. 정부는 MS가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관련 산업에 끼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라.
1. 정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스가 공개된 자유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활용에 적극 힘써야 한다.

2001년 11월 1일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Left / 안산 YMCA / 정보통신연대 INP / 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회

윈도XP 문제점과 OS 독점반대 토론회

◆ 일시 : 2001년 12월 8일 토요일 늦은 3시

◆ 장소 : 서울 기독교회관 대강당

◆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Left (<http://www.ipleft.or.kr>)

◆ 참석 : 백육인(서울산업대 교수), 이혁(IPLet), 오승한(서울대), 홍성태(상지대 교수)

임준우(다음커뮤니케이션 CPO), 김재섭(한겨레신문 기자), 주철민(IPLet)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한 윈도우XP에 개인사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MS에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MS는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력을 이용하여 닷넷(.Net) 전략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까지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윈도우XP와 닷넷 전략은 더 이상 MS의 사업전략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윈도우XP와 닷넷 전략의 문제점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MS 윈도우의 독점소송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MS의 운영체제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활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토론회가 MS 독점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 1 발제

윈도XP와 닷넷(.Net),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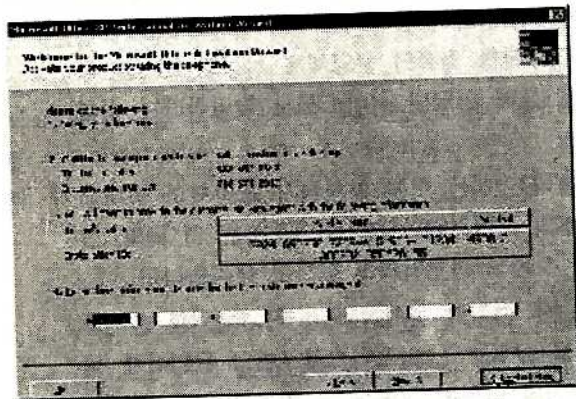
이 력 (IPLett)
antinet@daum.net



CorpWatch 웹사이트¹⁾에 올라와있는 이 사진을 보자. 지구본 전체를 덮고 있는 빌게이츠가 웃으면서 "내가 지구야~"라고 노래 부르고 있다.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헛된 근심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빌게이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구가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이미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윈도 XP, 오피스 XP 등 2000년대의 급격한 소프트웨어 발전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의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오피스 XP의 'Product Activation'

윈도 XP, 오피스 XP 등 앞으로 출시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부분의 제품은 설치된 이후에 50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려면 제품의 일련 번호(product key)와 컴퓨터 내부 정보를 조합하여 생성된 인스톨 번호(Install ID)를 인터넷 혹은 전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등록하여 확인 번호(Confirmation ID)를 받아서 입력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²⁾.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제품 활성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전송되는 정보는 인스톨 번호와 사용자가 살고 있는 국가 정보 이외의 정보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제품 활성화는 결코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품 활성화 기능을 채용한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때마다 인스톨 과정 중에 받은 확인 번호와 사용자 하

드웨어의 정보를 비교하여 틀린 경우는 실행이 중단된다.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새로 설치하는 등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 다시 제품 활성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³⁾.

문제는 이런 경우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전에 받은 확인 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새로운 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를 걸어서 새로 인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이전에 확인번호를 받은 사람과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 정보 없이 어떻게 동일한 사용자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인스톨 번호와 국가 정보만으로 동일한 사용자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윈도98는 98번 설치해야 하며, 윈도ME는 '나를 이겨봐(Win Me)'라고 다시 설치하는 사용자를 놀린다"라는 유머가 있다. 윈도 제품을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결국 사용자 등록을 해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제품 활성화가 사용자 등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제품 활성화 과정 중에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원하기만 한다면, 아주 쉽게 사용자의 인스톨 번호와 사용자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실제로 통합되어있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스톨 번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컴퓨터 내부 정보를 인스톨 번호에서 거꾸로 추출해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해킹을 핑계로 컴퓨터의 어떤 내부 정보를 사용해 인스톨 번호를 생성하는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생성하는 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윈도 XP, 오피스 XP는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웨어웨어가 아닌 상용 소프트웨어이다. 개인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 불법 복제 방지**를 이유로 '사용자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점점 더 네트워크화 되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극심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

Win32/Sircam Worm과 Code_Red

전자 우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Hi! How are you?"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웹 사이트에 전자우편 주소를 많이 남기는 필자도 지난 한달 간 100여 통의 Win32/Sircam Worm에 감염된 전자우편을 받았으며, 아직도 일주일에 2~3통 정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편지를 받고 있다.

이 편지에는 Win32/Sircam Worm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양한 종류의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첨부 파일을 읽는 경우, 그 컴퓨터도 감염된다. 또한, Win32/Sircam Worm 바이러스 자체에 전자우편 발송 기능(SMTP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빠른 속도로 다른 사용자도 감염시킨다. 특히, Win32/Sircam Worm 바이러스가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는 감염된 사용자의 하드 디스크의 파일이 첨부되어 발송되므로 개인 정보의 유출까지 일어난다⁴⁾.

최근에는 Code_Red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IS 웹서버를 운영중인 윈도 NT, 윈도 2000 프로페셔널과 서버 제품을 감염시킨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웹 사이트의 첫 페이지가 "Hacked By Chinese!"라는 내용으로 바뀌며(운영체제의 언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며, 한글 버전의 경우 바뀌지 않는다)⁵⁾, 다른 컴퓨터들에게 감염 패킷을 보내서 감염시키고, 특정 기간에 막대한 양의 패킷을 미국 백악관 웹 사이트로 보내어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한다(미국 백악관 웹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주소를 변경해서 공격을 모면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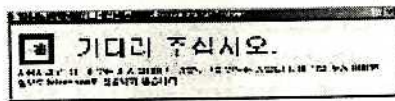
Code_Red 바이러스에 컴퓨터가 감염되면,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웹을 통해서 원격 제어함으로써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내용을 복사/삭제/변조할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국 1만3000여 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4만여 대 서버의 서버에 침투했고, 대량의 패킷 전송으로 전산망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⁷⁾.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중인 MSN 핫메일 서버마저도 코드레드 바이

러스에 감염되었다⁸⁾.

안철수 연구소에서 나온 Code Red 스캐너 프로그램⁹⁾으로 필자가 속한 회사의 네트워크 검사를 해본 결과, 7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되었으며, 모든 컴퓨터를 치료한 후에도 꾸준히 계속 외부에서 코드 레드 공격 패킷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n32/Sircam Worm 바이러스와 Code Red 바이러스는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윈도 XP와 오피스 XP가 사용자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바이러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모여진 윈도 XP와 오피스 XP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정보가 누출되었을 때의 피해를 한번 생각해보라.

네트워크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그 편리함과 두려움



Windows Update, windowsupdate.com, 사용자 정보도 전송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체크 표시는 모든 필요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코드 레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Windows 2000 서비스 팩'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한다.

windowsupdate.windows.com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옆 그림과 같은 새 창이 뜨면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MS사 제품을 검사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목록을 표시해준다.

또한 윈도 운영체제에 내장된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제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실행중인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의 새 버전을 나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런 경우들에도 어떠한 정보를 마이크로소프트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윈도 XP의 사용자 인증 덕분에 그 정보가 어떤 사용자의 것인지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면, 무척 이전부터 있어 왔다. 1995년 comp.risk라는 뉴스 그룹에 게시된 기사에 따르면, 윈도 95 베타판의 경우 등록 마법사(Registration Wizard)라는 작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 디렉토리 목록을 만든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서비스에 등록할 경우에 자동으로 전송한다고 한다(실제로 베타 버전을 사용한 한 사용자의 경우, 패킷 스니퍼라는 패킷 전송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디렉토리 구조 전체가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¹⁰⁾. 사용자가 등록 마법사의 'Send'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어떠한 사용자 정보도 전송하지 않는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인으로 이 논란은 진정되었지만¹¹⁾(베타 버전에만 포함된 기능이 정식 버전에서 삭제된 것일 수도 있다), 사용자 등록과 관련된 논쟁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민감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음만 먹으면(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windows update 사이트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처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지금은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윈도 XP의 사용자 등록 정보와 결합하여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지 분석할 수 있는(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주장하지만) 시대가 열렸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니라 Win32/Sircam Worm과 Code_Red의 사례가 보여지듯이 악의를 가진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패스포트와 헤일스톰의 파괴력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일 뿐만 아니라 MSN¹²⁾, 핫메일¹³⁾, Web TV 네트워크¹⁴⁾, 마이크로소프트 카포인트¹⁵⁾, Expedia¹⁶⁾, 마이크로소프트 홈 어드바이저¹⁷⁾, MSN 머니센트럴¹⁸⁾ 그리고, MSNBC¹⁹⁾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포털, 전자우편, 웹TV, 자동차, 여행, 가사 생활, 재정, 방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이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들은 다른 회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각 영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의 배경에는 패스포트 서비스와 헤일스톰 서비스가 있다.

패스포트 서비스²⁰⁾는 단일 로그인 서비스, 전자 지갑 서비스, 공개 프로필 서비스로 구성된 사용자 인증 서비스로, 사용자가 개인 정보, 신용카드 정보, 주소 정보 등의 정보를 한번만 패스포트 서비스에 입력하면, 패스포트 가맹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입력 없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²¹⁾.

핫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MSN 메신저를 이용하려면 패스포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패스포트 계정을 만들게 되면, 패스포트 가맹 사이트를 방문하면 사용자 정보가 전달되어 자동으로 로그인 된다(물론, 지금은 사용자의 선택이 필요하지만~~).

패스포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 지, 어떤 정보를 살펴보는 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패스포트 서비스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MSN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관련 기사를 오랫동안 읽은 사용자에게 그 자동차의 할인 판매 정보가 담긴 MS 카포인트 광고 메일을 사용자의 핫메일 계정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헤일스톰 서비스는 패스포트의 통한 인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 사용자 대상의 지능형 웹 서비스로 단말기 종류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의 계정으로 메일·주소록·일정관리·인스턴트 메시징 등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²²⁾"이다. 쉽게 말해서, 헤일스톰은 핸드폰, PDA, 컴퓨터, 곧 출시될 게임단말기 X박스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개인의 주소록, 프로필, 지리적 위치, 전자우편, 음성우편, 일정관리, 파일함, 프로그램 설정 정보, 웹 사이트 북마크, 전자지갑 등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²³⁾이다. 예를 들어, 헤일스톰 서비스를 사용하면 PC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자동으로 PDA 안에 있는 캘린더 프로그램에 일정이 입력되며, 같이 여행을 떠나는 동행자에게는 메신저나 메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게 된다.

닷넷 (.NET) 이라는 빅 브라더의 등장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개인 정보가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면, 사용자들의 편리함은 무척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과 함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지며, 개인 정보의 누출 가능성은 높아진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패스포트와 헤일스톰 서비스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서비스를 닷넷으로 통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즈니스 월간지에서는 닷넷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닷넷은 새로운 웹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틀이며, 콘텐츠 서비스 자체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로 바뀌어 따라 종전과는 다른 라이선스 방식인 월정액(subscription) 체제를 택하게 된다."²⁴⁾ 즉 윈도 XP, 오피스 XP의 다음 버전인 윈도 닷넷, 오피스 닷넷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돈을 내는 서비스로 바뀌게 된다.

윈도 닷넷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매달 돈을 내는 유료 서비스로 바뀌게 된다면, 윈도 닷넷 버전은 패스포트 계정이 있어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그것도 카드 정보나 은행 계좌 정보가 포함된 패스포트 계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만큼 확실한 개인정보가 있을까?).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닷넷 서비스는 사용자의 핸드폰, PDA, 컴퓨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

는 헤일스툼 서비스 없이 사용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

패스포트와 헤일스툼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어떤 사용자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언제든지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독점의 강화 : 마이크로소프트 세상

윈도 XP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당신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나 음성/화상 채팅, 기타 네트워크 기능 등 XP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하려면 패스पोर्ट를 등록해야 합니다. 패스पोर्ट를 설정하려면 이곳을 누르세요"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²⁴⁾. 따라서 윈도 XP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패스पोर्ट 계정을 만들게 될 것이며, 인스턴트 메신저는 AOL 메신저, 다음 메신저가 아닌 MSN 메신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윈도 XP 베타 버전에 포함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는 내장되었다가 사라진(그리고, 언제든지 포함될 수 있는) '스마트 태그(Smart Tag)'라는 기능이 있다. '스마트 태그'가 적용된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오피스 아웃룩 상에서 회사명, 업체명, 스포츠 단체 등 특정한 단어를 클릭하면 MS가 선택한 인터넷 사이트(당연히 MSN과 같은 MS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앞으로 닷넷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통합된다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메시지 서비스로 MSN 메신저를, 정보 검색은 MSN을, 자동차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 카포인트를, 여행정보 서비스는 Expedia를, 동영상/방송 서비스는 MSNBC를 추천하고 사용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윈도 95라는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넷스케이프 대신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실상의 독점적인 웹 브라우저로 만들었으며, 리얼 미디어 플레이어 대신에 자사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표준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 XP를 거쳐서 윈도 닷넷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어떠한 국가도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큰 권력기반을 가지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머지않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대부분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 XP', '윈도 XP', '제품 활성화 기능', '패스포트'는 이러한 가능성의 출발일 뿐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고 싶다면 우선 사용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의 불필요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스타 오피스 등 공짜이거나 보다 저렴하고 독점의 위험이 없는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한 인증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인 독점문제를 생각할 때, 미국 반독점법 항소심에서 윈도 운영체제와 이외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기를 기원해 보자.

참고자료

1. Microsoft, One World Operation System, <http://www.igc.org/trac/feature/microsoft/>
2. Microsoft Product Activation, http://www.microsoft.com/piracy/basics/xp_activation.asp
3. MS Users May Experience Pain, <http://www.wired.com/news/business/0,1367,41622,00.html>
4. Win32/Sircam Worm 바이러스 정보, http://home.ahnlab.com/securityinfo/virus_detail.jsp?SEQ_NO=843
5. Code_Red 바이러스 정보, http://home.ahnlab.com/securityinfo/virus_detail.jsp?SEQ_NO=843
6. 백악관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 모면, 중앙일보 2001.7.23
7. 코드레드 웬만큼 폭격??? 전국 4만 여대 서버에 침입, 동아일보 2001.8.9

8. MS서버도 코드레드 감염-美日中等 피해 확산, 동아일보 2001.8.10
9. 코드 레드 스캐너, <http://home.ahnlab.com/virusinfo/codered/01.html>
10. microsoft_wizard.article, http://www.eff.org/Privacy/microsoft_wizard.article
11. microsoft_wizard.response, http://www.eff.org/Privacy/microsoft_wizard.response
12. <http://www.msn.com>
13. <http://www.hotmail.com>
14. <http://www.webtv.com>
15. <http://www.carpoin.com>
16. <http://www.expedia.com>
17. <http://www.homeadviser.com>
18. <http://moneycentral.msn.com>
19. <http://www.msnbc.com>
20. <http://www.passport.com>
21. Passport란 무엇입니까?, http://memberservices.passport.com/ko/HELP/MSRV_HELP_whatis.asp
22. 새로운 인터넷 세상을 예고하는 헤일스툼, http://www.microsoft.com/korea/magazine/200106/SpecialReport/SpecialReport_01.htm
23. .NET을 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질주, http://www.microsoft.com/korea/magazine/200106/HotColumn/HotColumn_01.htm
24. Complaint and Request for Injustice, Request for Investigation and for Other Relief, http://www.epic.org/privacy/consumer/MS_complaint.pdf

제 2 발제

MS 반독점 소송의 발단과 전개과정

-제 1심 판결과 항소법원판결 및 최종합의문안을 중심으로-

오승한 (서울대 박사과정)

k117@sun.ac.kr

I. 미국 독점금지소송의 개요

미국의 독점금지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연방법무성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 on Department of Justice)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ttee)로 양분화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DOJ는 독점, 합병,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의 청구를 담당하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 일반을 주로 담당한다. 그러한 양기관의 업무가 정확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사건에 대한 소송을 누가 담당할 지는 실제 기관 실무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MS 사건의 경우 초기 FTC가 조사를 착수 했으나 이후 DOJ가 이를 넘겨 받아 진행된 것이다.

양기관의 구체적인 차이는 독점금지국은 독점금지행위의 조사를 하고 이를 법원에 직접 제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자체조사 후 위원회안에서 직접 위법성을 판결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일종의 행정심판제도와 유사하다. 만일 연방거래위원회의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미국 항소법원에 직접 반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대부분의 사건은 실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동의판결의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¹⁾ 특히 피고측이 불리한 경우 대부분 소송이 길어질수록 변호사비용 및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기 종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법리가 발달 되어 있는 미국 사회의 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연방차원의 독점금지법 이외에 주 정부(States) 산하에 있는 독점금지 위원회가 별도 존재한다. 주정부 산하의 독점금지 위원회는 특정 주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자신의 주법에 위반하는 반 독점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주 경계를 넘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연방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 행위가 특정주민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 정부 산하의 독점금지 위원회 역시 연방법원에 제소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도 연방독점금지국과 20개 주정부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또 하나 미국 독점금지소송제도의 특징중 하나는 사인에 의한 직접적인 독점금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당사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자는 반독점적 손해의 존재를 입증하여 법원에 직접

1) 동의판결(consent desree)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법원에 승인하고 이를 최종판결문(Final Judgement)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동의판결문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명령, 이행금지명령(Injunction)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법정모독죄로서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구제명령을 받고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사인이 입은 손해배상은 실 손해배상액이 아니고 실제 손해액의 3배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서면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체계는 처음부터 별도로 각각 제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역사적으로 서면법이 1890년 최초 탄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클레이튼법, 그뒤에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창설을 위한 연방거래위원회법이 탄생 했다. 따라서 각 법의 규제 영역에 조금씩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시행기관의 노력과 100년이 넘는 역사속에 누적되어온 판례법의 해석에 의해 각각의 특징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면법 1조는 경쟁자간의 담합행위, 끼워팔기, 경쟁자에 대한 배타적행위,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들을 주로 규율하고, 제2조는 독점화 및 독점력의 유지, 다른 시장의 독점화 시도들을 규제한다. 클레이튼법은 합병, 가격차별행위들을 규제하고, 연방거래위원회법은 각종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규제한다.

II. MS 소송의 발단과 배경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인 Microsoft(이하 MS)사의 Windows와 관련된 이 사건의 시작은 1997년 10월 20일 연방법무성이 MS사가 Windows95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선스 판매와 관련해 1995년의 동의판결(consent decree)²⁾을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법정모독죄(Contempt)의 인정과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³⁾ 이 사건은 Windows95 제품의 라이선스와 관련해 사전금지명령을 인정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과 이를 다시 파기 환송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후 동의판결상의 끼워팔기 금지 조항에 의한 제소에 한계를 느낀 연방법무성은 1998년 5월 18일 Windows98의 출시와 함께 MS사의 독점화, 끼워팔기 행위등에 대한 반독점소송을 제기 하였고, 20개 주정부도 이와 동시에 MS사에 반독점소송에 가세 하면서 독점금지법 위반여부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었다.⁴⁾

III. 1995년 동의판결 사건

1994년에 연방독점금지국은 IBM PC 및 IBM 계열의 PC 시장에서 MS사가 자사의 DOS 및 Windows 3.1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와 관련해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여 서면법 제1조와 2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이후 이 사건에는 유럽공동체의 경쟁당국도 함께 참가 하였다.⁵⁾ 연방독점금지국 유럽경쟁국은 공동으로 이와 같은 라이선

2) See UNITED STATES OF AMERICA v. MICROSOFT CORPORATION, 1995 U.S. Dist. LEXIS 20533, 1995-2 Trade Cas. (CCH) P71,096, August 21, 1995, Decided.

3) 동의 판결은 일종의 법원의 명령판결로써, 연방민사소송규칙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행위자에게 특정행위의 금지 혹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의 위반시 법정모독죄의 해당여부를 가리게 된다. See, Fed. R. Civ. P. 70 .

4) 이후 20개 주정부 중 사우캐롤라이나는 1998년 5월 18일에 시작된 반독점소송 도중 탈퇴, 뉴멕시코주는 반독점소송에 대한 항소심결정 후 재판의 합의 절차를 마침으로 현재 원고는 18개 주와 DOJ로 한정된다.

5)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MS가 DOS 및 자사의 Windows 3.1 프로그램을 IBM을 비롯한 기타 PC 제조업체(OEM)에게 한 개의 Processor(컴퓨터 주기억장치)단위로 라이선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PC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수량이 아니라, PC의 생산 단위로 요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제조업자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 동안 Microsoft에게 이 회사의 DOS나 Windows를 실제로 장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그들이 제조한 컴퓨터의 생산량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다. 따라서 컴퓨터 제조업자들이 Microsoft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Microsoft의 O/S이외에 다른 O/S가 장착된 PC를 판매하려면 또 다른 로열티를 지급해야 만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고 결국 OS에 관한 MS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스의 반독점적 행사 부분에 주목하여 MS의 독점력 행사를 막기 위한 동의판결을 MS와 합의함으로써 1994년 소송을 종료시켰다.⁶⁾

IV. 1997년 법정모독죄에 위반 사건개요

1. 사건개요

1997년 10월 20일 연방법무성은 MS사가 Windows95와 그것의 web browser인 Internet Explorer (이하 "IE")를 판매 하면서 1995년 동의판결 IV(E)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동의판결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죄를 근거로 위반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⁷⁾ 특히 문제가 되었던 (E) (i)의 단서 조항이었다.⁸⁾ 이 단서 조항은 이 조항이 MS가 통합상품들(integrated products)을 개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조항상의 '통합상품'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되었다.

연방독점금지국(DOJ)은 Windows 95의 라이선스 조건으로 web browser인 Internet Explorer (이하 "IE")가 통합상품이 아닌 별개의 분리된 상품으로서, MS사는 컴퓨터 O/S 소프트웨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OEM 업체에게 Windows 95의 라이선스 조건으로 web browser인 Internet Explorer (이하 "IE")를 라

6) See UNITED STATES OF AMERICA v. MICROSOFT CORPORATION, 1995 U.S. Dist. LEXIS 20533, 1995-2 Trade Cas. (CCH) P71,096, August 21, 1995, Decided.

7) 문제가 되었던 (E)조항은 MS가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i) MS사의 MS-DOS 6.22를 비롯한 Microsoft Windows 3.11, Windows for Workgroups 3.11 등의 이전 버전, 혹은 이들의 대체품인 사후 버전의 제품, 컴퓨터 O/S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ii) 컴퓨터 생산업체(original equipment systems;OEM)가 MS 아닌 상품을 라이선스하거나, 구매, 사용, 유통시키지 않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8) See, UNITED STATES OF AMERICA v. MICROSOFT CORPORATION, 1995 U.S. Dist. LEXIS 20533, 1995-2 Trade Cas. (CCH) P71,096, August 21, 1995, Decided., §E

이센스 받도록 함으로써 동의판결 (E)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OJ는 Internet Explorer는 독특하고, 중요한 상업적 필요성을 가진 상품으로 MS의 O/S와는 전적으로 분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

그러나 MS는 Windows95와 IE는 동의판결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통합상품(integrated products)이라고 반박하면서 소송에 들어 갔다. DOJ의 이와 같은 동의판결조항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죄 기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을 제기 했다. 첫째, 웹브라우저 기능을 포함하는 인터넷 관련 기술들은 1995년 7월 OEM 업체 들에게 배포되던 Windows95의 초기 버전포함 되어 있던 IE를 포함하고 있는 Windows95는 이전부터 단일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동의판결 IV(E)조항은 명백히 MS가 통합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Windows95가 그러한 통합 상품으로 이는 MS-DOS 6.0 과 Windows 3.1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통합한 것이다. 셋째, 통합된(integrated)란 단어는 '분리된 것을 결합하는 것'등을 말하는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리된 것들이 분해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합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¹⁰⁾

이 사건은 당시에 출시되던 Windows95와 IE 3.0, 4.0과의 끼워팔기 부분에 한정된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 인정

97년 12월 11일 연방지방법원은 DOJ의 '법정모독죄' 주장하는 자는 위반자가 동의판결 조항의 확신하고 애매모호하지 않은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실시하고, 동의판결조항 §(E)(i)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정모독죄에 인정 부분은 부인하였다.¹¹⁾ 그러나 법원은 MS의 행위가 당시 동의판결 조항의 취지에 명확히 부합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하고¹²⁾, 정확한 동의판결조항 즉 '통합상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판결을 계속 진행하였다.¹³⁾ 판결진행 명령과 함께 법원은 DOJ가 주장, 입증한 사실들에 사전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MS가 명시적 암묵적 조건으로 개인용 컴퓨터 O/S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Internet Explorer 3.0, 4.0 혹은 그 이후의 버전을 사전설치하고, IE함께 라이선스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계약조항에 삽입하지 말도록 사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¹⁴⁾

3. 항소 법원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기각

9) DOJ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이것이 Windows95로부터 분리된 독특한 상품임을 주장한다. 먼저 (a) Windows95와 인터넷 브라우저 상품에 대해서 각각 분리된 수요 즉, OEM업체와 최종 사용자의 수요가 분리되어 존재한다. (b) MS는 자사의 O/S 소프트웨어의 순수한 통합품 혹은 구성요소에 대해 행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Internet Explorer의 각 버전을 별도로 판매하고 라이선스하고 유포시킴으로서 별도의 수요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c) Internet Explorer의 각 버전을 Windows 95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업적으로 가능하다.

10) See, MEMORANDUM IN OPPOSITION TO PETI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AN ORDER TO SHOW CAUSE WHY RESPONDENT MICROSOFT CORPORATION SHOULD NOT BE FOUND IN CIVIL CONTEMPT, Supplemental to Civil Action No. 94-1564, November 10, 1997.

11) 지방법원은 MS가 동의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함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법정모독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확인하였다. See,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D.D.C. Dec. 11, 1997), 980 F.Supp. 537, pp. 541-542..

12) Id., at.541-542.

13) 통상, 동의판결의 명확화(clarification)는 금지명령(injunction)의 형태를 띄게 된다. 특히 금지명령을 규정한 연방 민사규칙 65(a)는 사전금지명령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See, Fed. R. Civ. P. 65.

14) UNITED STATES of America, Petitioner, v. MICROSOFT CORPORATION, Respondent., No. CIV.A. 94-1564 TPJ. Dec. 11, 1997.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istrict of Columbia., 980 F.Supp. 537.

98년 6월 23일 항소법원은 동의판결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Windows 95와 IE는 동의판결에서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통합된 상품'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금지명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면허 약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결정 했다.¹⁵⁾ 법원은 비록 개별상품의 수요가 별도로 존재하고 분리가능 하다고 할지라도 유용한 방법에 의해 기능들을 통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상품은 시장구조에 관계없이 새로운 단일 상품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신상품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¹⁶⁾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MS의 상품통합이 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현재의 판단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적인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MS는 양자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용할 실질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였다.¹⁷⁾ 법원은 이와 같은 실질적 이익에 대한 입증은 적어도 본안에서 승소가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는 사전금지명령을 부인할 사유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¹⁸⁾

V. 1998년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의한 계소

항소법원의 98년 6월 23일 판결로 사전금지명령이 기각되기 전, MS사는 98년 5월 15일 Windows95의 차기 버전인 Windows98의 출시를 계획하였다. MS사는 제품 출시 전에 DOJ와 20개 주정부와 합의를 모색함과 동시에, 연방항소법원에 97년 12월 11일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이 Windows98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별도의 청구를 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Windows98 제품은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¹⁹⁾ 결국 Windows98은 연방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을 파기환송 하기 전인 5월 18일 이미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DOJ와 20개 주정부는 98년 5월 18일 MS사의 전반적인 행위 들을 서면법 1조와 2조 혐의로 별도의 독점금지소송을 제기 하였다.²⁰⁾

이후 연방지방법원은 1999년 11월 5일 사실심(Trial Findings Fact)을 확정하고, 2000년 4월 이에 대한 법원판단(Conclusions of Law)²¹⁾을 내렸으며, 2000년 7월 7일 최종판결로 MS사를 O/S와 응용프로그램관련 부분 등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은 다시 항소법원에서 2001년 6월 28일 독점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일부파기, 일부환송 됨으로써, 독점화 부분에 대한 구제조치가 주로 연방지방법으로 환송되어 제

15)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331 U.S. App. D.C. 121, 147 F.3d 935 (D.C. Cir. 1998), at 953.

16) Id. at 950.; 신상품 이론은 'Jefferson' 판결에서 채용된 상품의 분리성 심사를 반박하기 위한 이론이다. Jefferson 판결에서는 부속상품에 대한 독립한 수요의 존재 여부를 상품의 독립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나, 종전의 분리된 수요가 존재하던 상품들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부속 상품에 대한 분리된 수요가 존재할 수 있고, 결국 부속 상품에 대한 분리된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 신기술로 통합된 상품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7) Id. at 950-952.

18) Id. at 951.

19) United States, APPELLEE v. Microsoft Corp., APPELLANT(No. 97-5343 consolidated with 98-5012),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OREDR (May 12, 1998), No. 94cv01564.

20) 처음 연방법무성과 20개 주정부로 구성된 원고는 98년 12월 27일 AOL과 Netscape 합병 발표 직후 South Carolina 주가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19개 주 정부로 감소하였다.

21)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 (TPJ)), Civil Action No. 98-1233 (TPJ)),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심리 되게 되었다.

1. 제 1심 판결의 내용

가. 연방독점금지국과 주정부의 MS사에 대한 계소내용

(가) 관련시장과 MS의 O/S 독점 및 진입장벽

연방법무성은 먼저 관련시장의 획정에 대해 PC O/S 시장을 Intel 호환 PC의 O/S 시장으로 정의하고 MS는 PC운영 체제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유지는 부분적으로 PC O/S 시장이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network effect²²⁾에 의해 특성화된 시장이라는 사실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³⁾

법무성은 PC용 O/S 시장의 진입장벽중 하나로 Windows를 기반으로 제작된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O/S는 궁극적으로 많은 응용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 사용자들은 되도록 많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O/S 소프트웨어를 선호한다. 현재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들은 Windows위에서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진입자가 Windows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들과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할 대체적인 O/S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O/S의 잠재적인 진입자는 성공적인 진입에 대한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을 맞이 하고 있다.²⁴⁾

결국 MS의 O/S독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잠재적인 위협은 O/S 시장에서 현재 존재하거나 혹은 갑자기 나타나는 새로운 진입자의 전면적인 공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다른 플랫폼(platforms)²⁵⁾위에서 작동될 수 있거나 혹은 응용프로그램 자체가 오히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상품들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⁶⁾

이에 따라 MS는 이러한 특정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미들웨어²⁷⁾들의 존재가 자신의 O/S 독점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

22) 'Network Effect'는 호환성이 중요시 되는 상품에서 중요한 진입장벽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의 경우 회사내 혹은 회사간의 전자결제 등을 위해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Windows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사내의 모든 기업이 Windows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사용자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Windows를 사용하는 것이 상호간의 파일 공유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ac OS의 경우 인텔 호환용 PC에서 사용되는 플로피 디스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특히 호환성이 문제되는 PC,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사용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등이 유지되기 위해 소비자들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성향이 강하다. (See, Michael Katz & Carl Shapiro, Antitrust in Software Markets (forthcoming Progress & Freedom Found. 1999) at <http://haas.berkeley.edu/shapiro/software.pdf>.)

23)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p.18-20.

24)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 p.2-4.; 이것은 이른바 Network Effect에 의한 진입장벽의 창출을 의미한다.

25) 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될수 있는 기반을 말하는 개념으로 Windows와 같은 OS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6)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 pp.2-3.; Navigator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서로다른 O/S 위에서 작동되도록 고안되어 있고, 그 자체가 여러 응용프로그램들이 다른 O/S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nterface를 가지고 있다.

27) 미들웨어는 그 자체가 다른 O/S에서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작동될수 있는 Intreface를 내장한 응용프로그램으로 Navigator, der, Real Audio, Media player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를 하였다고 DOJ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던 Navigator에 의한 위협이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Navigator는 1995년 Sun사가 개발한 JAVA 프로그램을 탑재함으로써 어느 운영체제에서든 완전한 호환성을 유지한 채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Navigator가 내장하고 있는 JAVA 프로그램을 위한 JVM이 일반 사용자의 PC에 설치됨으로써 JAVA 언어로 만들어진 다른 응용프로그램도 MS의 윈도우 운영체제 이외에 다른 운영체제에서 작동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었다.

(나) MS의 반경쟁적 행위

법무성은 MS가 Netscape의 브라우저에 의해 야기된 경쟁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Internet Explorer로 명명된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판매하고 유포할 광범위한 전략에 착수 하였다고 다음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이유를 밝히고 있다.

- 1) Internet Browser시장의 경쟁제한 시도하여 MS는 1995년 5월 브라우저 시장을 분할하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Netscape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Netscape가 이를 거절하였다.²⁸⁾
- 2)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하 ISP)²⁹⁾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s; 이하 OLS³⁰⁾)의 배타적 계약체결 하여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IE 만을 유포시키기 위한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³¹⁾
- 3)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Internet Content Providers; 이하 ICP)³²⁾와 경쟁브라우저 상품을 배제 시키기 위한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였다.³³⁾
- 4) OEM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들 업체가 PC초기화면과 바탕화면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Windows의 바탕화면에 대한 자사의 통제권을 장악하여 앞서 ISP, OLS, ICP 업체들에게 Internet Explorer에 대한 우선적 대우를 요구하는 배타적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

28)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70-74.

29) 이들은 사용자가 모뎀장치 등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0) 이들도 사용자가 자신의 PC에서 직접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On-Line 서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국의 경우 두루넷, 메가패스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ISP와 OLS를 포함하여 Internet Access Providers (IAPs)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31)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75.; 구체적으로 MS는 Windows 95의 바탕 화면에 인터넷 연결마법사라는 아이콘을 포함시켜서 이러한 일반사용자들이 인터넷 연결업체에 직접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MS는 인터넷연결마법사에 이들 서버서비스업체를 등록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Internet Explorer를 배타적으로 유포 홍보할 것,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자체를 없앨 것, 명백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경쟁 브라우저가 사용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그들의 연결소프트웨어에 Internet Explorer만을 포함하여 발송할 것, 그외 이들 업체들의 연결프로그램을 M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Internet Explorer와만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만들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32) 이들은 Disney, Hollywood Online, 그외 CBS Sportsline과 같은 뉴스, 오락물, 기타 다른 정보들을 Web을 통해 제공하는 업체들을 말한다.

33)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87-92.; MS는 IE4.0의 채널뷰어를 통해 이들을 최종사용자의 PC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ICP의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 경쟁브라우저 제조업자와 기타 경쟁브라우저의 유포, 판매, 홍보 등을 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경쟁브라우저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 자사의 Web Site들을 Microsoft의 자체개발 툴을 사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경쟁업체의 브라우저 보다 IE4.0에서 보다 잘 작동되도록 만들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요구 체결하였다.

다.³⁴⁾

- 5) Windows 95와 Windows 98에 Internet Browser 소프트웨어를 끼워판매 하여 경쟁 브라우저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법무성과 20개 주정부는 1) 서면법 2조에 위반한 PC용 O/S 시장의 독점화와 유지 행위³⁵⁾, 2) 서면법 2조에 위반한 Internet Browser 시장의 독점화 시도 행위 3)서면법 1조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배타적 거래와 기타 배타적 약정행위,³⁶⁾ 4) 서면법 1조에 위반한 불법적인 끼워팔기³⁷⁾ 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을 원인으로 MS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하였다.

2.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1999년 11월 5일 연방지방법원은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사실관계확정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에서 잭슨판사는 연방법무성과 주정부가 제출한 제소사실 대부분을 관련증거를 통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법적판결에서 MS의 독점금지법위반혐의가 대부분을 인정될 것으로 예측되었다.³⁸⁾ 특히 법원은 미들웨어(Middleware)의 위협이 MS의 O/S 독점의 실질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³⁹⁾, 이러한 미들웨어의 유포를 막기 위해 MS가 행한 행위 대부분이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척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였다.⁴⁰⁾ 또한 추가적으로 MS가 본래 어느 운영체제에서나 호환되도록 설계된 JAVA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MS의 운영체제 안에서만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 JAVA 프로그램으로 개량하였고, MS 전용JVM을 ICP, ISV(프로그램 개발업자:Independent Program Developer)들이 사용하도록 권유 유인하였던 행위를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하에 연방지방법원은 2000년 4월 4일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⁴¹⁾ 법원은 판결에서 MS의 행위가 1) 서면법 제1조에 의한 독점력의 유지⁴²⁾, 2)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화의 시도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⁴³⁾ 3) 서면법 1조에 위반하여 끼워팔기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⁴⁴⁾. 다만 원고들의 주장 중 4) 서면법 1조에 의한 배타적 거래협정에 대해서는 실제 피고의 행위에 의해 경쟁자인 네스케이프

34)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93-102.; MS는 Windows설치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을 OEM업체들이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초기 부팅과정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금지 함으로써 제조업자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그들의 상품을 차별화하고, 비 MS 계열의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다른 대체적인 사용자 Interface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internet 연결 서버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35)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137.

36)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130.

37)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134.

38)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84 F. Supp. 2d 9 (D.D.C. 1999).

39)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84 F. Supp. 2d 9 (D.D.C. 1999), PARA 73-77, pp. 29-30.

40)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84 F. Supp. 2d 9 (D.D.C. 1999), PARA 90-201, pp. 33-58.

41)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42) 연방지방법원은 ICP, ISV, OLS 등의 업체에게 무료로 IE를 배포하고, 다른 경쟁 브라우저의 홍보 판매 유통을 금지한 행위, OEM 업체들에게 MS가 사전 설치한 ISV, ICP 업체에 대한 직접 연결 아이콘의 삭제 금지 행위는 약탈적(predatory)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 했다. 따라서 그의 시장지배력과 약탈적 행위에 의해 MS는 서면법 제 2 조의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 했다. (See,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36-44)

43)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45-46.

44)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47-51.

가 완전히 시장에서 배척되는 결과를 발행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⁴⁵⁾

2000년 6월 7일 법원은 법률적 판단에 따른 최종 조치로 MS에게 O/S 소프트웨어에 관한 회사와 응용프로그램의 제조 생산판매를 위한 회사로 양분하는 명령과 그외의 Windows에서 응용프로그램의 작동을 유지 시켜주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의 공개, 배타적 약정체결의 금지 등을 명령하였다.⁴⁶⁾

3.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연방법원의 2000년 4월 내려진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중에서 서면법 2조의 독점화 부분에 대한 MS의 책임을 인정하였다.⁴⁷⁾

그러나 서면법 2조에 근거한 독점화의 시도에 대해서는 취소를 결정하였다. 그 근거는 서면법 2조의 독점화의 시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피고가 약탈적 혹은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2)독점화를 위한 특수 고의(specific intent)가 있으며⁴⁸⁾, (3) 피고가 독점력을 획득할 '위험한 가능성(dangerous probability)'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연방지방법원은 '위험한 가능성' 인정을 위해 필요한 브라우저 시장의 시장획정과 진입장벽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⁴⁹⁾

또한 서면법 제1조에 의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은 MS의 Windows O/S에 대한 IE의 끼워팔기 행위를 당연위법적 태도로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파기 환송 시켰다. 항소법원은 특히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끼워팔기 약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는 당연 원칙에 의한 분석보다 합리성의 원칙에 의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⁵⁰⁾ 즉 IE와 Windows의 끼워팔기 행위에 의한 반경쟁적 효과와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관련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작동,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비교 형량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MS는 연방지방법원의 책순판사가 판결 전 마스크과 가진 인터뷰 등을 이유로 책순 판사의 모든 결정을 무효화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⁵¹⁾ 그러나 항소법원은 책순 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그의 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책순판사의 소급적 자격박탈은 분할명령을 발한 날까지로 한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후의 환송된 판결에서는 책순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다.⁵²⁾

45)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51-53.

46)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97 F. Supp. 2d 59, 64-65 (D.D.C. 2000)

47)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2001 U.S. App. LEXIS 14324; 253 F.3d 34(D.C. Cir 2001), pp.55-56.

48) 특수고의 요건은 독점화 시도에 의한 서면법 2조 위반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도와 불법적인 의도를 구별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고의의 전형적인 형태는 1) 독점력을 얻기 위한 의도이거나, 가격을 지배하기에 충분한 힘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 2)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 또는 3) 또는 독점화 시도규정 위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되고 있다

49)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2001 U.S. App. LEXIS 14324; 253 F.3d 34(D.C. Cir 2001), pp.46-83.

50) Id., p.84.

51) Id., p.107.

52) Id., 108-118.

VI. 지방법원 환송이후 사건합의내용

1. 항소심 판결이후의 절차 대법원 상고기각

항소심 판결 이후 소송은 다시 연방지방법원의 환송되어 Colleen Kollar-Kotelly판사가 새로 사건을 맡아 독점의 유지 혐의와 관련된 구제명령에 관한 절차가 9월 12일부터 심리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항소법원의 판결이후 19개의 주 원고들 중 New Mexico 주는 다른 주들과 별도로 소송의 합의를 함으로써 원고는 18개 주와 연방법무성으로 변경되었다.

MS는 8월 7일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상고하였었다. 상고장에서 MS는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결정 중 독점의 유지 혐의를 인정한 6월 28일의 항소법원 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청구하고 있다.⁵³⁾ 그러나 10월 10일 연방대법원은 MS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연방법무성과 MS의 합의,동의판결을 위한 최종판결문안 제출

연방법무성은 11월 6일 그 동안 진행되어온 반독점 소송에 대한 MS사와 합의하고 그 내용을 최종 판결문으로 채택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 합의내용은 MS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고 장래의 유사행위 발생의 금지, 미들웨어 인터페이스(Middleware Interfaces)의 공개⁵⁴⁾, 서버용 프로토콜(Communication Protocols)의 공개⁵⁵⁾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⁵⁶⁾ 법원에 제출된 최종판결문 제안서는 독점금지절차 Tuney 법 16조에 따라 법무성의 경쟁적 영향력에 대한 진술과 함께 연방기록청에 의해 공표된다. 60일의 이의 기간 종결시에 법원은 제안된 동의판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갈 것이고 법원이 동의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시에 당사자의 합의가 최종 판결문으로 채택 될것이다. 그러나 원고중 9개주는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⁵⁷⁾ 여전히 소송의 완전 종료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53) See, Microsoft's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8/7/01)

54) Stipulation and Revised Proposed Final Judgment (11/06/2001) III. Prohibited Conduct, D; MS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MS의 미들웨어들이 Windows O/S와 연동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MS의 통합된 기능들을 조작하는 경쟁상품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5) Stipulation and Revised Proposed Final Judgment (11/06/2001) III. Prohibited Conduct, E; 이것은 MS사의 이외의 다른 서버용 소프트웨어들이 MS 서버가 작동하는 것과 똑 같은 방식으로 개인용 PC의 Windows와 호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MS가 자사의 PC O/S 독점을 서버용 소프트웨어의 경쟁을 제한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버용 O/S들은 미들웨어와 같은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MS의 Windows 독점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으로 기대 된다.

56) See, Stipulation and Revised Proposed Final Judgment (11/06/2001)

57) See, Washingtonpost, Wednesday, November 7, 2001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으면?

김재섭 (한겨레신문 기자)

jskim@hani.co.kr

“보도자료 너무 자주 내놓죠? 그렇다고 귀찮아 하지는 마세요.” 얼마전 마이크로소프트의 홍보대행사 직원이 닷넷 관련 보도자료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한 말이다.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업체 이름만 바꿔 계속 보내는 것에 따른 미안했던 모양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들어 얼마나 많은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월 윈도우엑스피(XP)를 내놓은 뒤부터 매주 서너건의 닷넷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대부분 어느 업체와 닷넷 관련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내용이다. 대상도 시스템통합(SI)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다양하다. 기자들은 이를 “닷넷 붐을 일으키기 위해 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통신의 전략적 제휴 추진이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소프트웨어 인터넷 회사들이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제휴 추진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나름대로 두 업체가 추진중인 전략적 제휴의 성사 가능성과 파장을 점치며,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통신은 전체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기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협력하는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다. 한국통신은 “이미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보다 더 좋은 배필은 없다”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으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진중인 '닷넷'과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결합을 통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닷넷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바꿔 전기나 전화처럼 이용료를 내고 쓰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이루려면 빠른 인터넷 이용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적은 비용으로 이용료를 받아내는 체제가 필요한데, 한국통신과 손잡으면 한꺼번에 해결된다.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윈도우와 오피스 이용자로 유치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전화요금 청구서에 포함시켜 받아낼 수 있다. 나아가 케이티프리텔과 케이티아이컴 등 한통 자회사들의 무선인터넷 표준도 거머쥌 수 있다.

한국통신은 초고속인터넷과 윈도우/오피스의 통합 상품으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올 수 있는 호재임에 분명하다.

달달아 전국의 자영업체와 중소기업 300여만개를 가입자로, 솔루션/콘텐츠 공급자를 협력업체로 각각 끌어들이고,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솔루션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는 '비투비 솔루션 유통' 사업도 날개를 달게 된다.

이 사업은 이상철 한통 사장이 임기 중 최대의 치적거리로 남기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두 업체 관계자들도 두 업체의 전략적 제휴가 국내 시장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한국통신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닷넷'과 '해일스툼'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닷넷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바꿔 전화처럼 이용료를 내고 쓰게 하고, 해일스툼은 사용자 인증 서비스(패스포트)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 관계자는 “한통과 손을 잡으면, 한통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한 소프트웨어 이용료 징수, 전국 전화국 인터넷데이터센터와 자회사에 윈도 닷넷 공급, 윈도 오피스와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통합 상품 판매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통신 전화국과 자회사들은 지금은 윈도 서버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닉스를 주로 도입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서버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면 닷넷을 구현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다른 업체와 제휴를 맺으면서 독점적 지위를 요구하다 미국 연방법원 항소심에서도 불공정행위 판결과 함께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한국통신에게도 통합 상품 등을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 것만 채용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 관계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통신이 이를 수용하면, 한글과컴퓨터와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통신·마이크로소프트 경쟁업체 “시장지배 사업자끼리의 잘못된 만남”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업체들은,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제휴를 각각 고속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름잡는 사업자끼리의 만남으로 규정하며, 더욱 강화된 시장지배력으로 근근히 유지되던 경쟁체제를 완전히 깰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윈도미'에 인터넷에 바로 접속시켜주는 구실을 하는 'KT-MS' 아이콘을 넣어,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바로 접속시켜주는 서비스 시장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알짜배기 기업 시장은 엠에스에게 거의 다 내준 상태에서 정부기관과 학교 시장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엠에스가 한통을 앞세워 공격해오면 그마저도 위태로워 진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이 초고속인터넷과 엠에스의 윈도 오피스를 함께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전략을 쓸 경우, 당할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전화업체 사장은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 시장은 엠에스와 손잡은 넷투폰 등 외국 업체로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아버지(정부)가 동생들(국내 중소 벤처기업)을 잘 보살피라고 유산을 줬더니, 저 혼자 예쁜 여자(마이크로소프트)와 잘 살겠다고 동생들 모두 밖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로통신은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제휴를 허용할 경우, 한쪽에서는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키워주고, 다른 쪽에서는 비대칭규제를 통해 발목을 잡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통신 지분을 5% 가량 갖게 될 경우, 한국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조차 어찌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에게 “가능하면 국산을 쓰라”고 한마디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곧바로 미국의 무역대표부에 보고 되고, 이를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라 통신위원회도 어찌할 수 없다.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한국통신

한국통신은 이런 지적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엠에스와 약속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통신이 마이크로소프트 덕에 세계적인 이-비즈니스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측면을 봐 달라”고 한다. 삼성전자 같은 정보가전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정보가전기기와 홈오토메이션 솔루션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는 것으로 세계시장에 나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 회사인 한국통신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서 얻을 것은 별로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필요에 따라 또다시 훈련받는 소비자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엑스피와 오피스 엑스피 사용자들에게, 제 값을 주고 정품을 구입한 사람에게까지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품 값을 치르는 순간 그 제품의 사용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사실을 오피스 엑스피 발표 몇일 전까지도 공개하지 않다가, <한겨레>가 오피스 엑스피 출시 사흘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자 마지못해 공식 발표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소비자 권리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닷넷은 소프트웨어를 전 기나 전화처럼 월 내지 연 단위로 사용료를 내고 쓰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월 내지 연 단위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인증 절차를 밟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닷넷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를 훈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공짜라는 인식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한글문서편집기 시장에서 아래아한글에 밀리자, 이벤트를 빙자해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돌렸다. 스티브 발머 사장 방한 때는 대학에 100만 카피를 무료로 뿌려, 한글과컴퓨터로부터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지혜로워지는 게 해결책

우리나라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태를 제어할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한마디 하면 바로 미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통상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소비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것을 사줘,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엠에스 워드와 아래아한글이 팽팽하게 경쟁할 때와, 엠에스가 오피스를 통해 아래아한글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한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이미 깨달았다.

토론2

MS의 끼워팔기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임준우 (다음커뮤니케이션 CPO)

woja@daumcorp.com

MS의 전략

MS는 이미 오래 전부터 OS, 브라우저, office 등을 독식하면서 정보화 시대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PDA, Xbox와 같은 다양한 기기로의 접근과 닷넷으로 대표되는 통합형 서비스 전략은 기존의 기술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MS의 위상에서 벗어나 통합 서비스 제공회사로 진출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미디어 채널인 NBC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 기반 미디어' 회사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MS는 현재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세계의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석권하려고 하는 것이죠.

끼워팔기의 문제

이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무차별 배포로 인해 넷스케이프가 사라져 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5%가 채 안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MS의 최대 강점인 Window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쉽고 강력하게 시장에 진입한 작은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OS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MS가 끼워팔기를 감행한다면 웬만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경쟁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TV가 전체 TV 시장의 90%를 장악했는데, 그 삼성전자가 갑자기 방송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방송국을 가려면 아주 어렵거나 새롭게 찾아서 등록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그 영향력은 아주 크겠죠.

이렇듯 끼워팔기는 실제 서비스 경쟁력이나 기술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업에게는 누구나 똑같은 경쟁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자기 분야도 아니고 경쟁력도 없는 사업에 자본을 투자해서 승부를 보려는 습성 때문이지요. '두부공장부터, 자동차까지'라는 말이 나오듯이요.

지금 MS가 메신저를 끼워팔고 그것에 의해 장악력이 높아지면 국내의 수십 개에 이르는 메신저 제공업체는 크나큰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오히려 메신저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관련 시장은 OS, 브라우저 등을 장악한 MS에게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보안/백신' 시장이든, '디지털 인화' 시장이든 MS가 진출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겠죠.

따라서 MS는 지금이라도 끼워팔기 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이는 국수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자국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제 3 발제

정보공유운동과 운영체제의 사회화

홍성태 (상지대 교수)

rayhope@chollian.net

1. 운영체제의 중요성

기술적으로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정보사회는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적 맥락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정보사회의 특징은 무엇보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개발 및 이용방식, 나아가 정보재의 생산과 이용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한 사회적 갈등이 전개되는 사회이다. 이런 관점에서 두가지 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컴퓨터의 사용'이란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다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서는 두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도현상이다. 초기에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보산업 전체를 소프트웨어분야가 주도하게 된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진행된 운영체제의 지배력 강화현상이다. 운영체제의 기술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 '사회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운영체제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 구실 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강력한 사회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사용'이 확대되면 필수룩 어떤 운영체제가 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것은 IBM 호환형 개인용 컴퓨터, 즉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한 놀라운 독점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운영체제의 독점이 증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까닭은 그것이 결국 정보사회의 기술적 하부구조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환경 자체를 한 기업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사용'을 주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이고, 다시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운영체제이다. 그러므로 운영체제의 사적 소유를 그 대로 인정하는 한, 정보사회의 기술환경을 한 기업이 좌우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독점 문제에 대한 대응은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 재무부 반독점국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반독점 소송'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당한 독점력 행사'를 저지하고 경쟁적 시장을 복구하려는 조치이다. 즉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대응이다. 이 대응의 최대목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의 소스를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리처드 스톨만이 1984년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정보공유운동으로 성장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그누GNU)의 개발을 목표로 시작된 이 운동은 1991년에 리눅스가 개발됨으로써 기술적으로는 '그누/리눅스 체계'의 형태로 일단락되었다. 이 운동은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선물경제'를 추구함으로써 사실상 '탈자본주의'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 정보화의 두가지 길

운영체제의 독점을 둘러싼 논쟁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정보사회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관점, 즉 '현실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정보화는 크게 두가지 대립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적 사유화의 길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돈 되는' 기술이 좋은 기술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수익성의 요구가 공공성의 요구를 제압하게 된다. 나아가 이것은 본래 공공재인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을 유례없이 강화한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작된 세계지적재산권체제의 변화가 그 좋은 예이다. 이 경로를 대표하는 것은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둘째, 탈자본주의적 공유화의 길이다. 여기서 우선 주의할 점은 이것이 반자본주의의 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비자본주의조차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보가 본래 공공재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길을 탈자본주의의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자본가들로부터는 반자본주의 혹은 비자본주의의 '혐의'를 받기도 한다.¹⁾

여기서 탈자본주의란 '비자본주의'이자 '비사회주의'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먼저 비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운동이 정보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스톨만이 고안한 것이 바로 '카피 레프트', 즉 '공유 저작권'이다. 물론 여기서 정보란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정보이지만, '카피 레프트'의 발상은 다른 일반 저작물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다음에 비사회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의 공유와 계획경제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획일적 사고는 정보기술의 '발산적 발달형태'와 어울리지 않는다. 정보기술은 다양한 요소들 간의 복합적이고 우연적인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 자본주의가 '돈의 지배'를 통해 기술의 발달과 이용을 제약한다면, 사회주의는 '획일성의 지배'를 통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난 정보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운영체제를 둘러싼 대립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생명정보와 같은 '근본적 정보'를 둘러싼 최근의 지구적 투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정보사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사회가 아니다. 현실 정보사회는 자본주의적 사유화의 길과 탈자본주의적 공유화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 사이의 대립 속에서 동요하고 있다. 나아가 탈자본주의적 공유화의 길은 실제로 끝난 '현실 사회주의'의 실험과도 큰 거리를 두고 있다.

3. 정보공유운동의 유형

정보사회의 지배적인 모델이 결국 '자본주의 정보사회'라면, 그 대항적인 모델은 '탈자본주의 정보사회'이다. 여기서 관건은 탈자본주의의 전망이 과연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리처드 스톨만이 주도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방식으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운동이 더욱 발전한다면, 확실히 지금의 정보산업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변화가 전개되어 가면서 '탈자본주의 정보사회'가 차츰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이런 전망 아래 주로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운동을 '정보공유운동'으로 부르려 한다.²⁾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운동은 1984년에 리처드 스톨만이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사실상 같은

1) 예컨대 리처드 스톨만은 단순히 해커를 넘어서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기도 하다. 비단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열린소스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그를 '빨갱이'로 여기기도 한다.
2) '자본주의적 정보화'가 생명정보 및 일반 콘텐츠의 사유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지난 몇년 사이에 이 운동은 이러한 분야로까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보공유운동'의 폭은 훨씬 넓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분야는 소프트웨어, 특히 운영체제 분야이다.

것이였다. 그러나 1998년에 에릭 레이몬드를 중심으로 '열린 소스운동'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이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여기에 전통적인 해커운동³⁾을 덧붙인다면 정보공유 운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이념적 핵심은 바로 '자유'이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제약도 없이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공유의 원칙이다. 이것은 정보의 자본주의적 사유화에 반대하는 것이면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화와도 크게 다른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정보 자체의 소유를 막는 것이다. 이 원칙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카피 레프트'가 고안되었지만, 이것 외에도 '정보접근권'의 확대가 반드시 요구된다.

둘째, 참여의 원칙이다. 이것은 개발자와 이용자의 거리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쉽게 일체화될 수 있다. 정보의 소비과정은 또 다른 정보의 생산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의 생성과 기술적 구현은 다른 문제이다. 그러므로 참여가 원칙으로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 위에서만 공유는 비로소 선물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유는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낳게 된다. 반대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약받게 된다.

'열린 소스운동'은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서 파생된 운동이다. 기존의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원칙주의'로 비판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이 운동은 에릭 레이몬드의 '성당과 시장'이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개발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성당과 장터'란 소프트웨어 개발의 두가지 방식을 상징한다. 성당은 소수의 천재 혹은 기업에 의해 폐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방식을 뜻한다. 마치 중세의 성당이 한 사람의 위대한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던 것처럼, 이에 비해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개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치 장터에서 사람들이 어지럽게 오고가며 질서를 형성하는 것처럼, 에릭 레이몬드는 자유소프트웨어와 사유소프트웨어를 막론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 장터의 방식이 훨씬 더 우월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카피 레프트'로 상징되는 공유의 원칙에 대한 비판이다. 에릭 레이몬드가 보기에 자유소프트웨어는 기술적으로 사유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업계에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그 이유는 '카피 레프트'가 사적 소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열린 소스운동 측에서는 이 제약을 없애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선에서 업계와 타협한다면, 자유소프트웨어가 확실히 소프트웨어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의 자유소프트웨어는 스톨만의 그것과 구분하여 '열린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해커운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에서 어떤 제약도 거부한다. 그것은 '정보는 공공재'라는 인식에 가장 철저하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정보를 사유화하는 데 대해 무력하다. 아니 그것에 대해 애초부터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 운동은 정보의 사유화를 본래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해커운동은 자본주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괴자'들의 범죄행위로 취급받기도 한다.

4. 운영체계의 사회화를 향하여

정보공유운동은 기술적 대안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발과 이용방식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것

3) 이것은 정보재의 사유화를 막고 의식적으로 공유화를 추구하는 '카피 레프트'도, 기술의 소유나 이용방식에는 눈을 감고 자유로운 기술 개발의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열린소스'도 거부한다. 해커는 그저 더 나은 기술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를 위해 사유화도 공유화도 열린소스도 모두 초월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입장이야말로 '무정부주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은 사회적 대안을 추구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것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고, 이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누/리눅스 체계'는 단지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정보사회를 탈자본주의 정보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것이 더욱 널리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불편하고 응용프로그램들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체계와 비교한 평가이다. 윈도우는 그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수많은 응용프로그램들과 하나의 거대한 기술체계를 이룬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서 특정한 사회적 방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기술체계를 이룬다. '그누/리눅스체계'는 바로 이 거대한 지배체계와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체의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응용프로그램들의 개발을 촉진하여 거대한 '대안의 기술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동시에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서 새로운 방식을 확산시켜 '대안의 사회-기술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 과제는 분명히 달성될 것이다.

이 운동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개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문제는 결국 '그누/리눅스 체계'를 더욱 널리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 경우의 경제적 보상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정보의 독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그누/리눅스 체계'의 사회적 의의를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윈도우와 달리 상품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공유운동과 정보사회운동의 긴밀한 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양자의 연대는 '그누/리눅스 체계'의 사회적 의의를 다른 일반 사회운동으로, 그리고 나아가 일반 이용자들에게로 전파시키는 데서 핵심적인 구실을 할 것이다.

셋째, '운영체계의 사회화'라는 과제를 더욱 분명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기술 개발이나 기술들 간의 역동적 경쟁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이 과제 자체는 윈도우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에서 드러났듯이, 지금으로서 윈도우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 독점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는 갈수록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안보적인 것이기도 하다.⁴⁾ 이 때문에 중국 정부처럼 투명한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누/리눅스 체계'의 투명성이 결국 사회성의 다른 얼굴이라는 점에서, '운영체계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체계의 사회화'는 사실 '운영체계의 사회성' 자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공익의 추구를 표방하는 모든 공공영역과 공공부문에서는 '운영체계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만 한다. 윈도우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과제는 '그누/리눅스 체계'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또 우리 사회운동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4) 윈도우는 단순히 사적으로 소유된 운영체제일 뿐만 아니라 '닫힌 운영체제'이기도 하다. 닫혔다는 것은 불투명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는 윈도우에 '개구멍'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모르게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닫힌 것이 열리면, 기술 개발이 훨씬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보'(혹은 보안)의 문제도 훨씬 드러나게 된다. 이 점에서 '그누/리눅스 체계'는 윈도우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인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그누/리눅스 체계'를 통한 '운영체계의 사회화'는 훨씬 더 민주적인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

주철민 (IPLet)

4hacker@naver.com

1.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

소프트웨어 산업은 네트워크외부효과 이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이다. 네트워크외부효과란 80년대 브라이언 아더라는 사람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 경제학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고전 경제학에서 상품의 가치는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적을수록 증가한다.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 희소성 때문이다. 주위사람들 누구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비싼 돈을 지불하며 다이아몬드를 사려하겠는가?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영체제로 윈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후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윈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워드프로세서인 한글의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워드프로세서로 한글을 사용하다가 MS-WORD로 바뀌게 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이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문서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MS-WORD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글의 사용에서 MS-WORD의 선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의 효용가치를 넘어서는 "네트워크가 주는 외부효과"(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가 존재하는 경우 기술 경쟁에서의 승자가 단순히 제품의 우월이나 효용(efficiency)만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응용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독점화 현상은 그 어떠한 것보다 심화되어 나타난다. 운영체제는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소프트웨어로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는 이를 기반으로 동작되어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응용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운영체제인 윈도를 기반으로 워드프로세서인 MS-WORD, 사무용 소프트웨어 OFFICE,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미디어 소프트웨어인 윈도 미디어까지 거의 대부분의 응용소프트웨어를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운영체제의 장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¹⁾ 운영체제를 장악하면 대부분의 응용소프트웨어를 장악하기가 훨씬 쉬어지는 것이다.

2.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MS는 표준을 장악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표준에는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과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의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적 표준이 국가나 기업들 간

1)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지만 MS는 운영체제 장악이라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장의 비표준화를 통해 호환성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에게 윈도의 인터페이스를 공개하지 않아 경쟁업체의 응용프로그램이 윈도에서 잘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취했다.

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표준이라면 후자는 시장 경쟁을 거쳐 정착되는 기술적 표준이다. MS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권을 이용해 사실상 표준을 장악하고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자신의 독점권을 유지해왔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바와의 기준 표준 논쟁인데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모두 동작하도록 설계하고 싶다면 운영체제에 맞게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어야했다. 그러나 객체 지향언어인 자바는 한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간에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진 것이다. 이는 MS와 빌게이츠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한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어디에서도 동작한다면 윈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윈도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들이 그누/리눅스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동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윈도를 선택해야 하는 필연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MS는 자바 버전에 윈도에서만 작동하는 기능들을 추가하여 그들의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최근 출시된 윈도 XP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표준 프로토콜에 확장된 기능을 추가하고 새 프로토콜을 만든다." 이는 MS의 내부 비밀문서인 할로윈문서²⁾에서 밝힌 MS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응한 시장의 장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이다. 시장의 폐쇄적인 독점유지 전략은 MS사가 취해온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운영체제를 장악한 MS의 전략을 기반으로 엄청난 시장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독점력을 기반으로 향후 닷넷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MS의 시장 독점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의 시장 우월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것이다.

3. 기술은 통합된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정보사회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킹 기술로 인해 엄청난 질적/양적 팽창을 통해 가능했다. 서로 흩어져서 존재했던 정보들이 네트워킹이라는 기술로 하나로 모아진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휴대전화, PDA를 비롯한 각종 통신 기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텔레비전, 오디오등 미디어 분야와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분야까지 모두 인터넷 기반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 MS는 닷넷 전략을 바탕으로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그 수단은 지금껏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들의 운영체제인 윈도 XP를 이용하여 각종 응용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전략은 윈도 XP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행보는 더욱 더 빨라질 것이다. 모든 기술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통합되고 이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MS의 모습을 본다면 과거에 비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력의 기반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며, 그와 함께 운영체제의 사회화 운동은 더욱 절박하게 인식되어야 할 질 것이다.

4.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공짜를 넘자

응용 소프트웨어의 부족이나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누/리눅스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 만큼의 그누/리눅스 철학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누/리눅스를 공짜 소프트웨어나 값이 매우 싼 상품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기업에서 추구하는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공짜로 제품을 나눠주는 것이다.³⁾ MS가 자신의 MS-WORD를 사용케 하기위해 초-

2) 이 문서가 98년 11월 1일 할로윈 날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MS의 내부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들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그 대표적인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에 대해 자세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함께 MS와 같은 거대한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처법까지 포함하고 있다. 원문: <http://www.opensource.org> 한글 번역문은 <http://www.freebsd.org/~cjh/freetime/oss/halloween/> "최준호"에 가면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백만 카피를 무료로 배포한 이유는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위에서 설명한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인식할 때 하나의 상품이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면 다른 상품이 쉽게 진입할 수 없고 더 많이 장악하고 있을수록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공짜 전략은 사유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일반 기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략으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현재 존재하는 공짜 소프트웨어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넘어서야 할 것이다.

논라이벌⁴⁾ 상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하는 탄력성을 지녀야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짜'만큼 위대한 선택은 없다. 그들은 유저들에게 미디엄을 구입하게끔 하고 실은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것이다. 물결이 있어야 물이 움직이고 공기가 있어야 소리가 이동하듯이, 컴퓨터 사용자들은 거대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이동시키는 '신에테르', 즉 미디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배포하는 '공짜 브라우저'는 단기간 내에 거대한 호수로 탈바꿈하게 된다. 유저들은 단지 물을 만나 때로 물러드는 고기 때에 불과하며,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은 낚시꾼의 역할을 위해 호수 주변으로 몰려들게 된다. 낚시꾼들은 고기가 잘 잡히는 호수가에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이곳을 명소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천재적인 낚시꾼이라 할지라도, 호수의 주인이 누리는 번영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⁵⁾

5. MS독점력 해소를 위한 방안 - OS사회화

우리 사회에서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은 MS라는 기업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정보사회에서 운영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운영체제의 시장 우월성은 필연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전 세계 운영체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MS가 그들의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윈도의 소스코드공개와 함께 이를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다. 운영체제를 사회화시켜 그들의 독점력을 제거하고 운영체제는 이미 사회화된 상품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6. 정부의 역할

정부는 정보화 기반을 시장의 역할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구로써 정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활용과 접근에 대해서 평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계급·성·연령·빈부·교육의 수준 등에 따른 정보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소스가 공개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개발 및 이용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물론 제품의 가격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재의 경우 가격결정의 기준 자체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가격에 두 개의 제품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논라이벌 상품이란 공기나 물처럼,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며, 경쟁이나 희소 가치가 없이 무한대로 풍부한 상품을 의미한다.

5) "MS와 넷스케이프의 공짜주의" 하형일 칼럼 howpc 98년 5월호 www.howpc.com

디지털 문화정책

제 7장 입법운동

활동개요 / 312

의견서 :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313

의견서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 316

의견서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 320

성명서 :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326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남희섭 / 328

'디지털 콘텐츠법 문제 많다'·남희섭 / 329

'디콘법'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홍성태 / 330

[참고자료] '위험한 디지털 콘텐츠법'·박성호 / 331

활동개요

선진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 후진국이라는 질타(?)와 압력을 받아오던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 전부터 지적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가고 있다. 1998년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9년에는 WIPO 저작권조약을 반영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선진국에서도 아직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디지털콘텐츠 보호법안을 2001년 11월에 제정하였고,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는 창작에 대한 보상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지적재산의 법률적 보호요건으로 '창작'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접속자들의 폭넓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쇄신되는 역동적인 온라인의 문화의 기본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이 법들은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법안들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굳이 이런 법리적인 문제점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법안들은 정부부처의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되어 졸속으로 입법화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법안의 제, 개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선진국들은 왜 아직 입법화하지 않고 있는지, 이 법안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콘텐츠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인지, 이 법안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직 콘텐츠 산업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정보강국이 된다는 알팍한 논리를 앞세워, 정보산업의 주무부서가 되고자 하는 정보통신부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문화관광부의 밥그릇 싸움이 있었을 따름이다.

IPLeft는 이런 정부의 졸속 입법을 저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0년 12월에 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01년 11월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발전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디콘법과 저작권법의 제·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성명서를 내는 한편, 여러 언론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는 활동을 벌였다.

의견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 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생산, 유통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최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유통이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 법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의 권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는 의견과 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지적재산권 법제가 과연 합당한 시스템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 사이에서 사회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닌, 창작성도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성급한 시도라 생각한다. 이는 '창작에 대한 보호'가 아닌 '투자에 대한 보호'로서 자칫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정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작성 등의 2차 저작을 제한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안의 제정에 앞서, 이 법이 사회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가 기존의 저작권법을 수정 보완하는 범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이용 범위의 확대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되는 정보는 대부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로 말미암아 정보의 흐름이 제한될 경우,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뒤따라서는 안 되며,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이용과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대상에 공공의 정보를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거나 독

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이용을 해치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

▶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정부 법안 제6조)

- 공익단체의 비영리적 이용
- 기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정부 법안 제8조)

- 공공의 정보를 소재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가 특정 정보를 독점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을 해치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 제한

정부의 법안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아직 국제 규약 등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기간에 설정에 대한 관련 산업 특성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보호기간을 재검토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그 가치가 유지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최초 보호기간이 자체가 무의미해질 경우가 많고,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는 공공의 정보가 많으므로, 최초의 보호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 기간은 사회적 이익과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나 체계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보호기간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 기간(정부 법안 제14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
 - 데이터베이스가 보호기간 내에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내용

□ 공공정보 이용 촉진 방안

○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념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고, 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가 임의적 사항으로 남아 있으며, 또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제작 주체만으로 바라보고 있어,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등이 투입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해야 하며, 또 공적자금이 상당부분 투입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가 특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작 활성화

공공정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 활성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현 법안에서는 정부는 공공정보에 대한 목록과 이용규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만을 의무화하여,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민간부분에 이양하고 정부는 그 중개의 역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공공정보의 독점을 낳을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공공정보만이 데이터베이스로 제작되어, 국민이

필요한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정부가 주도하며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사항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 함. (정부 법안 제2조7항)
-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상당부분 투입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제3조)
 - ※ 위 두 내용을 하나로 묶어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조항 또는 포괄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주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제10조)

이에,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관련 산업 및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좀더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2.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이용의 범위와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 기간을 공공의 이익과 제작자의 이익이 조화되는 시점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4.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 하여야 한다.
5.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지지하며, 동시에 상당부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001년 2월 10일

진보네트워к센터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